

# 선거관리위원회공보

제 75 호

2012년 3월 30일(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 — 목 차 —

공명선거 담화문 .....	105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107
<b>법 규</b>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	1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	1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	147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148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158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159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6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69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일부개정훈령 .....	17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	17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	172
<b>질의회답</b>	
[공직선거법] .....	173
LED 네온보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73
인터넷언론사의 예비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관한 질의회답 .....	173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174
후보자 정보 제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터넷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	175

약칭 당명 사용에 따른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관한 질의회답 ..... 17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75

스마트 홈페이지에 내장된 인터넷전화를 활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질의회답 ..... 176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방송 전환 홍보사업에 관한 질의회답 ..... 177

예비후보자의 인터넷생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178

명예퇴직 공무원의 입후보에 관한 질의회답 ..... 178

예비후보자의 당내경선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17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활동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179

정당의 정기간행물 작성·배부에 관한 질의회답 ..... 180

예비후보자 등의 외국대학교 연구경력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180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81

4대강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질의회답 ..... 181

재심개시결정 후 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질의회답 ..... 182

이 정년 전역 예정자의 입후보에 관한 질의회답 ..... 182

지역별로 내용이 다른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에 관한 질의회답 ..... 182

통일부장관 특강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183

선거구역의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추가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 183

국도종주 자전거길 지킴이단 발대식 행사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184

추가된 선거구역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 185

유권자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85

인터넷 손바닥tv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85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교체에 관한 질의회답 ..... 186

당내경선 투표소에서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86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당선자 예상 여론조사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87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88

선거기간중 홍보마케팅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189

문화바우처 사업추진에 관한 질의회답 ..... 189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 관한 질의회답 ..... 190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녹화기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190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시 수취인 성명 기재에 관한 질의회답 ..... 191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날인시 조립식도장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191

선거기간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국교육자 대표회의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92

선거기사의 복사 게시·전송에 관한 질의회답 ..... 193

인터넷을 통한 당선자 맞추기 행사에 관한 질의회답 ..... 194

후보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등에 관한 질의회답 ..... 195

정당의 정책홍보 라디오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 195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196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196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196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197

정당·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질의회답 ..... 198

[정치자금법] ..... 199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특별당비 부과에 관한 질의회답 ..... 199

**공 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국민통합당) ..... 200  
 중앙당등록공고(경제백성당) ..... 201  
 중앙당등록공고(국민생각) ..... 202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불교통일연합당) ..... 203  
 중앙당변경등록공고(친박연합) ..... 204  
 중앙당변경등록공고(미래연합) ..... 205  
 보조금지급공고 ..... 206

**공지사항**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 207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 208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 209



## 공명선거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도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분수령이 될 선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만큼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좌우도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으며, 여야나 무소속조차도 없는 오로지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만으로 이번 선거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방과 흑색선전, 돈 선거 그리고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근절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틀 안에서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선거가 되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로서 국민의 힘은 선거에 참여하는 데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자질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지혜롭게 선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표로써 엄정하게 심판하여 법을 어긴 사람은 더 이상 당선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도 솔선하여 법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여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주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론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 각종 이익단체나 사회단체의 공직선거법 준수,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 금지원칙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거는 민주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만 민주정치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이 그대로 온전하게 선거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하시어 주권자의 엄중한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능 환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등록현황 □

### 정당별 후보자등록상황

시도명	선거구수	정당별 후보자수																				
		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국가재건최연환	국민의힘	국민행복당	기독교자유민주당	녹색당	대한국당	미래연합	민주통일당	불교정도와합통일연합당	정통민주당	진보신당	청년당	한나라당	무소속
합 계	246	928	230	210	52	55	3	20	4	1	22	4	2	1	5	1	1	32	23	3	1	258
서울특별시	48	174	46	45	8	3	1	9	0	1	11	0	0	1	2	0	1	11	6	2	0	27
부산광역시	18	69	18	16	1	2	0	4	0	0	1	0	1	0	0	0	0	2	2	1	0	21
대구광역시	12	60	12	10	6	2	1	1	2	0	2	0	0	0	1	0	0	0	1	0	0	22
인천광역시	12	38	12	11	4	1	0	1	0	0	0	0	0	0	0	0	0	2	1	0	0	6
광주광역시	8	35	2	6	1	8	0	0	0	0	0	0	0	0	0	0	0	2	1	0	0	15
대전광역시	6	24	6	5	6	1	0	0	0	0	0	1	0	0	0	0	0	2	1	0	0	2
울산광역시	6	21	6	2	1	4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6
경기도	52	178	52	45	4	7	0	3	0	0	6	0	0	0	2	0	0	11	3	0	0	45
강원도	9	30	9	8	1	1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9
충청북도	8	26	8	7	4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5
충청남도	10	41	10	9	10	2	0	0	0	0	0	1	0	0	0	0	0	2	1	0	1	5
전라북도	11	46	7	11	2	5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20
전라남도	11	49	8	11	0	7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21
경상북도	15	62	15	11	1	5	0	1	2	0	1	1	1	0	0	0	0	0	0	0	0	24
경상남도	16	59	16	9	1	6	0	0	0	0	1	0	0	0	0	0	0	0	2	0	0	24
제주특별자치도	3	10	2	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3
세종특별자치시	1	6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 직업별 후보자등록상황

시도명	후보자수	직업별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정치인	농·축산업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엔론인	금융업	약사·의사	변호사	종교인	회사원	교육자	정보통신업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합 계	928	171	0	0	0	306	11	14	1	1	1	10	4	1	8	62	3	25	79	4	3	0	22	202
서울특별시	174	32	0	0	0	61	0	2	0	0	0	1	2	1	2	9	0	2	18	0	1	0	0	43
부산광역시	69	10	0	0	0	20	0	2	0	0	0	1	1	0	2	4	0	2	10	0	0	0	1	16
대구광역시	60	8	0	0	0	24	0	1	0	0	0	1	1	0	2	3	0	0	8	2	0	0	2	8
인천광역시	38	8	0	0	0	14	0	1	0	0	0	0	0	0	0	4	0	1	4	0	0	0	0	6
광주광역시	35	8	0	0	0	9	0	0	0	0	0	1	0	0	0	2	0	1	3	0	0	0	0	11
대전광역시	24	5	0	0	0	5	0	0	0	0	0	0	0	0	0	4	0	0	4	0	0	0	0	6
울산광역시	21	3	0	0	0	9	0	0	0	0	0	0	0	1	1	0	2	1	0	0	0	0	0	4
경기도	178	38	0	0	0	59	1	2	0	0	0	1	0	0	0	13	1	11	11	2	1	0	3	35
강원도	30	6	0	0	0	10	0	0	0	0	0	1	0	0	1	5	0	0	0	0	0	0	3	4
충청북도	26	6	0	0	0	6	3	0	0	0	0	0	0	0	0	4	0	0	1	0	0	0	0	6
충청남도	41	7	0	0	0	17	1	1	0	0	0	1	0	0	0	0	1	2	1	0	0	0	1	9
전라북도	46	7	0	0	0	18	0	1	0	0	0	0	0	0	0	3	0	3	2	0	1	0	2	9
전라남도	49	8	0	0	0	21	1	1	0	1	1	1	0	0	0	0	0	0	4	0	0	0	1	10
경상북도	62	12	0	0	0	16	3	1	0	0	0	1	0	0	0	3	1	1	6	0	0	0	4	14
경상남도	59	10	0	0	0	13	1	2	1	0	0	1	0	0	0	6	0	0	4	0	0	0	3	18
제주특별자치도	10	2	0	0	0	3	1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1	1
세종특별자치시	6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2

학력별 후보지등록상황

시도명	후보 자수	학 력 별																		
		미기재	무학 (독학)	초퇴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전문 대재	전문 대퇴	전문 대졸	대재	대퇴	대학교 수료	대졸	대학 원재	대학 원퇴	대학원 수료	대학 원졸
합 계	928	15	2	0	3	3	3	1	23	2	0	13	13	21	1	342	26	6	56	398
서울특별시	174	3	0	0	1	0	0	0	1	0	0	3	4	7	1	62	6	0	9	77
부산광역시	69	1	1	0	0	0	0	0	1	0	0	0	3	0	0	23	1	0	6	33
대구광역시	60	0	0	0	0	0	0	0	2	0	0	2	0	0	0	12	4	0	4	36
인천광역시	38	1	0	0	0	0	0	0	0	0	0	2	0	1	0	12	0	1	5	16
광주광역시	35	0	0	0	0	0	0	0	1	0	0	1	0	3	0	18	0	0	1	11
대전광역시	24	1	0	0	0	0	0	0	1	0	0	0	0	0	0	10	2	0	1	9
울산광역시	21	1	0	0	0	0	0	0	2	0	0	0	0	0	0	10	0	0	3	5
경기도	178	4	0	0	1	2	1	0	1	0	0	1	2	6	0	71	6	2	7	74
강원도	3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3	1	0	3	12
충청북도	26	0	0	0	0	0	0	0	1	1	0	0	0	0	0	12	0	0	1	11
충청남도	41	1	0	0	0	0	1	0	3	1	0	0	1	0	0	13	1	0	0	20
전라북도	46	1	0	0	0	0	0	0	2	0	0	2	3	0	0	16	1	1	6	14
전라남도	49	1	0	0	1	0	0	0	0	0	0	1	0	3	0	19	0	0	1	23
경상북도	62	1	0	0	0	0	1	1	3	0	0	0	0	0	0	21	0	1	5	29
경상남도	59	0	1	0	0	1	0	0	4	0	0	0	0	0	0	26	2	1	3	21
제주특별자치도	1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2	1	0	1	5
세종특별자치시	6	0	0	0	0	0	0	0	0	0	0	1	0	0	0	2	1	0	0	2

성별·연령별 후보지등록상황

시도명	후보자수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미만	30세이상 39세이하	40세이상 49세이하	50세이상 59세이하	60세이상 69세이하	70세이상
합 계	928	862	66	13	21	242	445	185	22
서울특별시	174	155	19	4	5	53	72	37	3
부산광역시	69	65	4	2	3	21	30	12	1
대구광역시	60	58	2	0	2	14	35	8	1
인천광역시	38	36	2	1	0	6	21	10	0
광주광역시	35	31	4	1	0	9	16	9	0
대전광역시	24	22	2	1	2	5	13	3	0
울산광역시	21	19	2	0	1	6	8	6	0
경기도	178	161	17	1	4	51	89	31	2
강원도	30	29	1	0	0	10	14	6	0
충청북도	26	25	1	0	1	4	13	7	1
충청남도	41	39	2	1	0	12	16	11	1
전라북도	46	44	2	1	2	9	26	5	3
전라남도	49	47	2	0	0	8	27	11	3
경상북도	62	58	4	1	0	14	33	13	1
경상남도	59	58	1	0	1	15	25	15	3
제주특별자치도	10	9	1	0	0	4	4	1	1
세종특별자치시	6	6	0	0	0	1	3	0	2

**최고령 후보자 현황**

순 위	시도명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생년월일	연 령
1	경기도	김포시	국민행복당	김두섭	1930/03/13	82세
2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기창군	무소속	정막선	1931/12/28	80세
3	전라북도	정읍시	무소속	강광	1936/09/24	75세
4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무소속	이진삼	1937/02/10	75세
5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민주통합당	홍재형	1938/03/27	74세
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무소속	박희부	1938/10/05	73세
7	전라남도	무안군신안군	무소속	한화갑	1939/02/01	73세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새누리당	현경대	1939/02/21	73세
9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무소속	김태식	1939/08/12	72세
10	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 봉화군울진군	무소속	김중권	1939/11/25	72세

**최연소 후보자 현황**

순 위	시도명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생년월일	연 령
1	경기도	안성시	미래연합	정선진	1987/03/07	25세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을	창조한국당	서정민	1986/02/15	26세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을	무소속	김순범	1985/10/17	26세
4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1985/04/08	27세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청년당	권완수	1984/10/11	27세
6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청년당	박주찬	1984/09/29	27세
7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무소속	김기환	1984/07/08	27세
8	인천광역시	남구갑	무소속	이형호	1983/11/02	28세
9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무소속	임거진	1983/10/15	28세
10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당	오정익	1983/09/16	28세

**시·도별 경쟁률 현황**

시·도명	제18대 국선경쟁률			제19대 국선경쟁률			시도별 경쟁률			
	의원정수	후보 등록수	경쟁률 (평균)	의원정수	후보 등록수	경쟁률 (평균)	최고		최저	
							선거구명	후보등록수	선거구명	후보등록수
합 계	245	1,119	4.6 : 1	246	928	3.8 : 1	-	-	-	-
서울특별시	48	233	4.9 : 1	48	174	3.6 : 1	종로구	10	서대문구갑외7	2
부산광역시	18	76	4.2 : 1	18	69	3.8 : 1	남구을	6	금정구외2	2
대구광역시	12	43	3.6 : 1	12	60	5.0 : 1	중구남구	8	달서구병	2
인천광역시	12	57	4.8 : 1	12	38	3.2 : 1	부평구갑	5	중구동구용진군외3	2
광주광역시	8	38	4.8 : 1	8	35	4.4 : 1	동구	8	광산구을	2
대전광역시	6	32	5.3 : 1	6	24	4.0 : 1	서구을	5	내덕구	3
울산광역시	6	24	4.0 : 1	6	21	3.5 : 1	중구의1	5	북구의1	2
경기도	51	228	4.5 : 1	52	178	3.4 : 1	성남시중원구	7	수원시정외10	2
강원도	8	40	5.0 : 1	9	30	3.3 : 1	동해시삼척시	6	강릉시외2	2
충청북도	8	40	5.0 : 1	8	26	3.3 : 1	보은군옥천군영동군	5	충주시외1	2
충청남도	10	47	4.7 : 1	10	41	4.1 : 1	당진시	8	천안시갑외5	3
전라북도	11	55	5.0 : 1	11	46	4.2 : 1	익산시을외1	6	전주시완산구을외4	3
전라남도	12	55	4.6 : 1	11	49	4.5 : 1	여수시갑	9	무안군신안군	2
경상북도	15	58	3.9 : 1	15	62	4.1 : 1	구미시갑	7	김천시외2	2
경상남도	17	78	4.6 : 1	16	59	3.7 : 1	창원시진해구	8	창원시마산합포구외3	2
제주특별자치도	3	15	5.0 : 1	3	10	3.3 : 1	제주시갑	4	제주시을외1	3
세종특별자치시	-	-	-	1	6	6.0 : 1	-	-	-	-

등록후보자수별 선거구수 현황

시도명	정수	경쟁률	후보자수	등록후보자수별 선거구수 현황										
				후보자 없음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합 계	246	3.8:1	928	0	0	43	76	66	36	14	5	4	1	1
서울특별시	48	3.6:1	174	0	0	8	20	11	5	2	1	0	0	1
부산광역시	18	3.8:1	69	0	0	3	3	7	4	1	0	0	0	0
대구광역시	12	5.0:1	60	0	0	1	0	4	3	2	1	1	0	0
인천광역시	12	3.2:1	38	0	0	4	3	4	1	0	0	0	0	0
광주광역시	8	4.4:1	35	0	0	1	2	2	1	1	0	1	0	0
대전광역시	6	4.0:1	24	0	0	0	1	4	1	0	0	0	0	0
울산광역시	6	3.5:1	21	0	0	2	1	1	2	0	0	0	0	0
경기도	52	3.4:1	178	0	0	11	18	15	7	0	1	0	0	0
강원도	9	3.3:1	30	0	0	3	3	1	1	1	0	0	0	0
충청북도	8	3.3:1	26	0	0	2	3	2	1	0	0	0	0	0
충청남도	10	4.1:1	41	0	0	0	6	1	1	1	0	1	0	0
전라북도	11	4.2:1	46	0	0	0	5	1	3	2	0	0	0	0
전라남도	11	4.5:1	49	0	0	1	2	4	2	1	0	0	1	0
경상북도	15	4.1:1	62	0	0	3	2	4	3	2	1	0	0	0
경상남도	16	3.7:1	59	0	0	4	5	4	1	0	1	1	0	0
제주특별자치도	3	3.3:1	10	0	0	0	2	1	0	0	0	0	0	0
세종특별자치시	1	6.0:1	6	0	0	0	0	0	0	1	0	0	0	0

후보자의 병역신고 현황

시도명	후보자수	후보자 병역신고 현황			
		계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해당없음 (비대상)
합 계	928	928	711	151	66
서울특별시	174	174	119	36	19
부산광역시	69	69	55	10	4
대구광역시	60	60	48	10	2
인천광역시	38	38	32	4	2
광주광역시	35	35	22	9	4
대전광역시	24	24	20	2	2
울산광역시	21	21	17	2	2
경기도	178	178	136	25	17
강원도	30	30	26	3	1
충청북도	26	26	18	7	1
충청남도	41	41	34	5	2
전라북도	46	46	38	6	2
전라남도	49	49	41	6	2
경상북도	62	62	51	7	4
경상남도	59	59	42	16	1
제주특별자치도	10	10	8	1	1
세종특별자치시	6	6	4	2	0

재산신고액별 후보지등록현황

시도명	후보 자수	재산신고액별 등록후보자수																비고	
		계	채무(-)						5천 만원 미만	5천만 원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10억 원미만	10억 원이상 ~ 30억 원미만	30억 원이상 ~ 50억 원미만	50억 원이상 ~ 70억 원미만	70억 원이상 ~ 100억 원미만	100억 원이상 ~ 300억 원미만		300 억원 이상
			1천 만원 미만	1천만 원이상 ~ 5천만 원미만	5천만 원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합 계	928	928	2	7	3	6	1	65	47	246	205	250	58	9	15	9	5	0	
서울특별시	174	174	1	0	0	2	1	15	7	40	41	47	13	0	3	3	1	0	
부산광역시	69	69	0	0	0	0	0	3	3	17	15	21	4	2	1	2	1	0	
대구광역시	60	60	0	3	1	0	0	4	3	24	9	12	3	0	1	0	0	0	
인천광역시	38	38	0	0	0	0	0	3	3	6	6	12	4	2	1	1	0	0	
광주광역시	35	35	0	1	0	0	0	3	4	10	6	8	2	0	1	0	0	0	
대전광역시	24	24	0	0	0	0	0	3	0	5	4	10	2	0	0	0	0	0	
울산광역시	21	21	0	0	0	0	0	2	3	4	5	5	1	1	0	0	0	0	
경기도	178	178	0	0	0	0	0	8	8	49	53	41	11	2	4	1	1	0	
강원도	30	30	0	0	0	0	0	0	2	9	4	12	3	0	0	0	0	0	
충청북도	26	26	0	0	0	1	0	2	1	6	3	9	2	1	0	0	1	0	
충청남도	41	41	0	1	0	1	0	4	2	11	6	14	0	0	0	1	1	0	
전라북도	46	46	0	0	0	0	0	6	1	16	7	11	3	1	1	0	0	0	
전라남도	49	49	1	0	0	0	0	1	4	9	16	16	1	0	1	0	0	0	
경상북도	62	62	0	1	1	1	0	6	2	20	7	16	6	0	1	1	0	0	
경상남도	59	59	0	1	1	1	0	4	3	18	16	12	2	0	1	0	0	0	
제주특별자치도	10	10	0	0	0	0	0	1	1	2	4	2	0	0	0	0	0	0	
세종특별자치시	6	6	0	0	0	0	0	0	0	0	3	2	1	0	0	0	0	0	

재산신고액 최다 후보자

순 위	시도명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신고재산액(천원)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누리당	정몽준	2,019,423,405
2	충청남도	천안시	새누리당	김호연	225,058,668
3	경기도	화성시	새누리당	고희선	146,206,730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누리당	김세연	98,604,579
5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새누리당	박덕홍	54,174,419
6	인천광역시	남구	새누리당	윤상현	22,485,671
7	경기도	파주시	무소속	박정	19,907,975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소속	류승구	16,759,039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소속	정근	16,634,617
10	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새누리당	강석호	14,128,104

재산신고액 최소 후보자

순 위	시도명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신고재산액(천원)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소속	권현성	-1,137,949
2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무소속	조위필	-248,200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민생각	이현호	-234,618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국당	최우원	-158,000
5	경상남도	의령군함안군합천군	통합진보당	박민웅	-151,902
6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민주통합당	최국태	-130,000
7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한나라당	윤정홍	-127,713
8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통합진보당	문성현	-71,955
9	대구광역시	중구남구	무소속	이재용	-63,559
10	경상북도	구미시	친박연합	박대식	-60,329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고액 현황

시도명	후보자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액별 후보자수							
		없음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합 계	928	23	53	37	132	55	287	139	202
서울특별시	174	8	9	6	34	6	50	21	40
부산광역시	69	1	1	3	9	3	19	13	20
대구광역시	60	1	4	5	13	2	19	10	6
인천광역시	38	1	0	2	3	3	8	9	12
광주광역시	35	1	5	2	4	0	15	3	5
대전광역시	24	1	3	0	2	1	8	4	5
울산광역시	21	0	0	1	4	1	6	1	8
경기도	178	4	3	5	21	20	53	30	42
강원도	30	0	1	1	2	2	9	6	9
충청북도	26	0	3	0	1	2	8	3	9
충청남도	41	1	5	2	6	2	15	5	5
전라북도	46	1	4	3	7	4	9	9	9
전라남도	49	2	5	1	9	0	24	3	5
경상북도	62	1	4	4	8	4	22	3	16
경상남도	59	1	4	2	9	5	18	12	8
제주특별자치도	10	0	1	0	0	0	3	5	1
세종특별자치시	6	0	1	0	0	0	1	2	2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납 신고액 현황

시도명	후보자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액별 후보자수							
		없음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합 계	928	823	37	18	22	7	14	4	3
서울특별시	174	157	6	2	3	1	3	2	0
부산광역시	69	62	2	1	3	0	1	0	0
대구광역시	60	53	5	0	1	0	1	0	0
인천광역시	38	30	3	0	3	0	2	0	0
광주광역시	35	33	0	1	0	0	0	0	1
대전광역시	24	24	0	0	0	0	0	0	0
울산광역시	21	20	1	0	0	0	0	0	0
경기도	178	145	10	7	6	3	5	0	2
강원도	30	26	0	1	0	2	1	0	0
충청북도	26	22	2	1	0	0	1	0	0
충청남도	41	36	2	3	0	0	0	0	0
전라북도	46	44	0	0	1	1	0	0	0
전라남도	49	47	1	0	0	0	0	1	0
경상북도	62	56	2	1	3	0	0	0	0
경상남도	59	52	3	1	2	0	0	1	0
제주특별자치도	10	10	0	0	0	0	0	0	0
세종특별자치시	6	6	0	0	0	0	0	0	0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현재납 신고액 현황

시도명	후보자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액별 후보자수								
		없음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합 계	928	922	1	1	0	0	3	0	1	
서울특별시	174	173	0	0	0	0	1	0	0	
부산광역시	69	69	0	0	0	0	0	0	0	
대구광역시	60	59	0	0	0	0	1	0	0	
인천광역시	38	37	1	0	0	0	0	0	0	
광주광역시	35	35	0	0	0	0	0	0	0	
대전광역시	24	24	0	0	0	0	0	0	0	
울산광역시	21	21	0	0	0	0	0	0	0	
경기도	178	176	0	0	0	0	1	0	1	
강원도	30	30	0	0	0	0	0	0	0	
충청북도	26	25	0	1	0	0	0	0	0	
충청남도	41	41	0	0	0	0	0	0	0	
전라북도	46	46	0	0	0	0	0	0	0	
전라남도	49	49	0	0	0	0	0	0	0	
경상북도	62	62	0	0	0	0	0	0	0	
경상남도	59	59	0	0	0	0	0	0	0	
제주특별자치도	10	10	0	0	0	0	0	0	0	
세종특별자치시	6	6	0	0	0	0	0	0	0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고액 최다 후보자

순 위	시도명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신고액(천원)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새누리당	정몽준	39,154,924
2	충청남도	천안시을	새누리당	김호연	7,103,223
3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새누리당	박덕흠	4,825,154
4	서울특별시	강남구갑	무소속	권현성	4,245,764
5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자유선진당	성원종	3,609,682
6	경기도	화성시을	새누리당	리출선	3,172,019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새누리당	김세연	2,997,119
8	경기도	화성시갑	새누리당	고희선	2,978,105
9	부산광역시	중구동구	새누리당	정의화	2,562,209
10	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새누리당	강석호	2,138,503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고액 최소 후보자

순 위	시도명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신고액(천원)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무소속	김광종	0
1	경상남도	진주시을	무소속	최성원	0
1	서울특별시	성북구갑	미래연합	최덕찬	0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을	무소속	김순범	0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민행복당	이희정	0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을	정통민주당	이문용	0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불교연합당	정재복	0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통민주당	정홍진	0
1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청년당	박주찬	0
1	대구광역시	동구갑	국민행복당	전창국	0
1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자유선진당	이수일	0
1	광주광역시	서구갑	새누리당	성용재	0
1	대전광역시	서구을	정통민주당	서진희	0
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국민행복당	김기평	0
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통합진보당	김미희	0
1	경기도	수원시을	정통민주당	유근만	0
1	경기도	안성시	미래연합	정선진	0
1	충청남도	당진시	기독교당	김창기	0
1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새누리당	김태구	0
1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	통합진보당	유현주	0
1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통합진보당	김동주	0
1	경상북도	영주시	무소속	권부익	0
1	서울특별시	서초구갑	국민행복당	양한별	0

후보자 전과건수별 현황

시도명	후보자수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수	전 과 건 수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합 계	928	186	116	42	22	3	2	1	0	0	0	0	0
서울특별시	174	31	18	8	3	1	1	0	0	0	0	0	0
부산광역시	69	13	10	2	1	0	0	0	0	0	0	0	0
대구광역시	60	11	5	5	1	0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38	8	5	1	2	0	0	0	0	0	0	0	0
광주광역시	35	7	3	3	1	0	0	0	0	0	0	0	0
대전광역시	24	3	2	1	0	0	0	0	0	0	0	0	0
울산광역시	21	2	0	1	1	0	0	0	0	0	0	0	0
경기도	178	43	28	9	6	0	0	0	0	0	0	0	0
강원도	30	3	2	1	0	0	0	0	0	0	0	0	0
충청북도	26	4	2	0	1	1	0	0	0	0	0	0	0
충청남도	41	7	5	2	0	0	0	0	0	0	0	0	0
전라북도	46	17	13	2	1	0	1	0	0	0	0	0	0
전라남도	49	11	7	2	2	0	0	0	0	0	0	0	0
경상북도	62	8	8	0	0	0	0	0	0	0	0	0	0
경상남도	59	15	6	4	3	1	0	1	0	0	0	0	0
제주특별자치도	10	1	1	0	0	0	0	0	0	0	0	0	0
세종특별자치시	6	2	1	1	0	0	0	0	0	0	0	0	0

정당별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시도명	선거구수	정당별 후보자수																			
		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가자! 대국민중심당	국가재건최고회의	국민의힘	국민행복당	녹색당	대한국당	미래연합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	정통민주당	진보신당	청년당	한나라당	무소속
합 계	246	1,711	622	446	53	170	5	21	1	6	1	18	2	1	4	1	23	31	3	2	301
서울특별시	48	390	131	127	6	41	1	10	1	1	1	8	0	1	1	1	8	7	2	0	43
부산광역시	18	124	48	27	2	12	1	4	0	0	0	1	1	0	0	0	1	3	1	0	23
대구광역시	12	101	47	13	4	4	1	0	0	3	0	2	0	0	1	0	0	1	0	0	25
인천광역시	12	94	37	27	3	11	0	1	0	0	0	0	0	0	0	0	3	4	0	0	8
광주광역시	8	44	2	16	0	8	0	0	0	0	0	0	0	0	0	0	1	1	0	0	16
대전광역시	6	44	14	12	8	4	0	0	0	0	0	0	0	0	0	0	2	1	0	0	3
울산광역시	6	32	14	4	1	5	0	0	0	0	0	0	0	0	0	0	0	2	0	0	6
경기도	52	372	151	104	4	38	1	3	0	0	0	5	0	0	2	0	7	5	0	0	52
강원도	9	48	17	17	1	3	0	1	0	0	0	0	0	0	0	0	0	0	0	0	9
충청북도	8	42	18	10	5	5	0	0	0	0	0	0	0	0	0	0	0	1	0	0	3
충청남도	10	58	15	14	12	7	0	1	0	0	0	0	0	0	0	0	1	1	0	1	6
전라북도	11	60	10	21	3	5	0	0	0	0	0	0	0	0	0	0	0	1	0	0	20
전라남도	11	56	7	18	0	7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3
경상북도	15	104	50	14	1	4	0	1	0	2	0	1	1	0	0	0	0	0	0	0	30
경상남도	16	118	54	17	1	14	0	0	0	0	0	1	0	0	0	0	0	3	0	0	28
제주특별자치도	3	18	5	5	1	2	0	0	0	0	0	0	0	0	0	0	0	1	0	1	3
세종특별자치시	1	6	2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 비례대표후보자 등록현황 ▣

정당별 후보지등록상황

정 당 별 후 보 자 수																				
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국민생각	가자! 대국민중심당	국가재건최박연합	국민행복당	기독교자유민주당	녹색당	대한국당	미래연합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	정통민주당	진보신당	청년당	한국기독교당	한국문화예술당	한나라당
188	44	38	16	20	4	7	7	4	6	8	3	3	2	4	7	7	4	2	1	1

직업별 후보지등록상황

정당명	후보자수	직업별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정치인	농·축산업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언론인	금융업	약사·의사	변호사	종교인	회사원	교육자	정보통신업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합 계	188	1	0	0	0	91	1	7	0	0	0	2	1	0	3	4	1	14	14	1	0	0	2	46
새누리당	44	1	0	0	0	15	1	3	0	0	0	0	0	0	2	1	0	4	7	1	0	0	0	9
민주통합당	38	0	0	0	0	19	0	1	0	0	0	0	0	0	1	3	0	0	4	0	0	0	0	10
자유선진당	16	0	0	0	0	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통합진보당	20	0	0	0	0	11	0	0	0	0	0	1	0	0	0	0	0	3	1	0	0	0	0	4
창조한국당	4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국민생각	7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2
가자!대국민중심당	7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국가재건최박연합	4	0	0	0	0	3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국민행복당	6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기독교자유민주당	8	0	0	0	0	2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녹색당	3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대한국당	3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미래연합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	4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정통민주당	7	0	0	0	0	3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3
진보신당	7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3
청년당	4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한국기독교당	2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한국문화예술당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한나라당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학력별 후보자등록상황

정당명	후보자수	학 력 별																		
		미 기 재	무학 (독학)	초퇴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전문 대재	전문 대퇴	전문 대졸	대재	대퇴	대학교 수료	대졸	대학 원재	대학 원퇴	대학원 수료	대학 원졸
합 계	188	14	0	0	2	0	0	2	5	0	0	1	2	4	1	68	4	1	15	69
새누리당	44	2	0	0	0	0	0	0	1	0	0	0	0	1	0	17	0	0	2	21
민주통합당	38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1	1	4	17	
자유선진당	16	0	0	0	0	0	0	1	0	0	0	0	0	0	5	0	0	1	9	
통합진보당	20	0	0	0	1	0	0	0	1	0	0	0	1	2	1	10	1	0	2	1
창조한국당	4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2	
국민생각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6	
가자!대국민중심당	7	1	0	0	0	0	0	1	0	0	0	0	0	0	4	1	0	0	0	
국가재건최연결	4	0	0	0	0	0	0	0	1	0	0	0	0	0	2	0	0	0	1	
국민행복당	6	1	0	0	1	0	0	0	0	0	0	0	0	1	0	2	1	0	0	
기독자유민주당	8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1	4	
녹색당	3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1	
대한국당	3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미래연합	2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0	0	0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	4	1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1	
정통민주당	7	0	0	0	0	0	0	0	1	0	0	1	0	0	1	0	0	1	3	
진보신당	7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청년당	4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0	0	1	
한국기독당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한국문화예술당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한나라당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성별 · 연령별 후보자등록상황

정당명	후보자수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세미만	30세이상 39세이하	40세이상 49세이하	50세이상 59세이하	60세이상 69세이하	70세이상
합 계	188	109	79	5	16	53	65	43	6
새누리당	44	23	21	0	3	13	14	14	0
민주통합당	38	20	18	2	2	17	15	2	0
자유선진당	16	10	6	0	0	2	9	3	2
통합진보당	20	10	10	0	3	8	8	1	0
창조한국당	4	2	2	1	1	1	1	0	0
국민생각	7	4	3	0	0	2	2	3	0
가자!대국민중심당	7	7	0	0	0	1	1	4	1
국가재건최연결	4	2	2	0	0	2	2	0	0
국민행복당	6	3	3	0	0	1	1	3	1
기독자유민주당	8	6	2	0	0	1	2	4	1
녹색당	3	1	2	0	2	0	1	0	0
대한국당	3	3	0	0	0	0	0	2	1
미래연합	2	2	0	1	0	0	1	0	0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	4	4	0	0	0	0	3	1	0
정통민주당	7	3	4	0	0	2	2	3	0
진보신당	7	3	4	0	2	2	2	1	0
청년당	4	2	2	1	3	0	0	0	0
한국기독당	2	2	0	0	0	0	0	2	0
한국문화예술당	1	1	0	0	0	1	0	0	0
한나라당	1	1	0	0	0	0	1	0	0

최고령 후보자 현황

순 위	정 당 명	후보자명	생년월일	연 령
1	가자!대국민중심당	윤영오	1937/03/23	75세
2	기독교당	권영식	1938/09/15	73세
3	자유선진당	안대륜	1940/01/25	72세
4	대한국당	김의웅	1940/06/12	71세
5	자유선진당	변웅전	1940/10/15	71세
6	국민행복당	한영애	1941/08/10	70세
7	한국기독교당	전영춘	1942/10/17	69세
8	새누리당	박주용	1942/10/23	69세
9	새누리당	최봉홍	1942/11/28	69세
10	새누리당	윤기성	1943/02/10	69세

최연소 후보자 현황

순 위	정 당 명	후보자명	생년월일	연 령
1	청년당	우인철	1985/05/12	26세
2	미래연합	조민희	1984/07/03	27세
3	민주통합당	정은혜	1983/09/08	28세
4	창조한국당	이지영	1983/05/03	28세
5	민주통합당	안상현	1983/01/16	29세
6	민주통합당	김광진	1981/04/28	30세
7	통합진보당	김재연	1980/10/30	31세
8	진보신당	박은지	1979/01/23	33세
9	창조한국당	윤지영	1977/10/28	34세
10	민주통합당	장하나	1977/06/19	34세

후보자의 병역신고 현황

정당명	후보자수	후보자 병역신고 현황			
		계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해당없음(비대상)
합 계	188	188	84	25	79
새누리당	44	44	16	7	21
민주통합당	38	38	15	5	18
자유선진당	16	16	7	3	6
통합진보당	20	20	7	3	10
창조한국당	4	4	2	0	2
국민생각	7	7	4	0	3
가자!대국민중심당	7	7	5	2	0
국가재건최전방연합	4	4	2	0	2
국민행복당	6	6	2	1	3
기독교자유민주당	8	8	6	0	2
녹색당	3	3	1	0	2
대한국당	3	3	3	0	0
미래연합	2	2	2	0	0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	4	4	3	1	0
정통민주당	7	7	2	1	4
진보신당	7	7	2	1	4
청년당	4	4	1	1	2
한국기독교당	2	2	2	0	0
한국문화예술당	1	1	1	0	0
한나라당	1	1	1	0	0

재산신고액별 후보자등록현황

정당명	후보자수	재산신고액별 등록후보자수															비고	
		계	채무(-)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5억원이상	10억원이상 ~ 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70억원미만	7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5억원이상											
합 계	188	188	5	2	0	1	1	17	9	61	34	36	7	7	3	4	1	0
새누리당	44	44	1	0	0	0	1	2	1	5	9	16	3	4	1	1	0	0
민주통합당	38	38	0	0	0	0	0	1	3	16	11	7	0	0	0	0	0	0
자유선진당	16	16	0	1	0	0	0	0	0	6	3	2	0	3	0	0	1	0
통합진보당	20	20	2	0	0	0	0	3	1	10	3	1	0	0	0	0	0	0
창조한국당	4	4	0	0	0	0	0	0	0	2	0	1	1	0	0	0	0	0
국민생각	7	7	0	0	0	0	0	0	0	0	2	2	1	0	2	0	0	0
가자!대국민중심당	7	7	0	0	0	0	0	0	0	0	4	2	0	0	0	1	0	0
국가재건최연환	4	4	0	0	0	0	0	0	2	2	0	0	0	0	0	0	0	0
국민행복당	6	6	0	0	0	0	0	1	1	3	1	0	0	0	0	0	0	0
기독교자유민주당	8	8	0	0	0	0	0	3	0	3	0	2	0	0	0	0	0	0
녹색당	3	3	0	0	0	0	0	1	0	2	0	0	0	0	0	0	0	0
대한국당	3	3	0	0	0	0	0	0	0	2	0	0	1	0	0	0	0	0
미래연합	2	2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	4	4	0	0	0	0	0	2	0	2	0	0	0	0	0	0	0	0
정통민주당	7	7	2	0	0	0	0	0	0	2	0	2	0	0	0	1	0	0
진보신당	7	7	0	0	0	0	0	1	1	4	1	0	0	0	0	0	0	0
정년당	4	4	0	1	0	1	0	1	0	1	0	0	0	0	0	0	0	0
한국기독교당	2	2	0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한국문화예술당	1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한나라당	1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재산신고액 최다 후보자

순 위	정당명	후보자명	신고액(천원)
1	자유선진당	안대륜	37,790,326
2	새누리당	현영희	18,152,366
3	가자!대국민중심당	구천서	11,982,845
4	정통민주당	유상두	10,397,824
5	미래연합	김하영	10,114,949
6	국민생각	김승제	9,501,598
7	새누리당	주영순	9,383,113
8	국민생각	박재숙	8,553,242
9	자유선진당	강창규	6,899,280
10	새누리당	류지영	6,762,614

재산신고액 최소 후보자

순 위	정당명	후보자명	신고액(천원)
1	새누리당	서미경	-545,875
2	청년당	강연제	-107,400
3	자유선진당	서규석	-47,000
4	청년당	오탈양	-10,000
5	통합진보당	윤금순	-8,106
6	정통민주당	이유원	-5,000
7	새누리당	김상민	-3,514
8	통합진보당	조윤숙	-1,000
9	정통민주당	임규오	-534
10	기독교당	최숙자	0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고액 현황

정당명	후보 자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액별 후보자수							
		없음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합 계	188	9	10	7	35	20	59	17	31
새누리당	44	0	0	0	3	2	17	7	15
민주통합당	38	0	2	2	8	6	12	6	2
자유선진당	16	1	1	0	2	2	4	1	5
통합진보당	20	1	5	1	4	3	4	2	0
창조한국당	4	0	1	0	1	1	0	0	1
국민생각	7	0	0	0	1	0	3	0	3
가자!대국민중심당	7	0	0	0	1	0	4	0	2
국가재건진박연합	4	0	0	0	2	0	1	1	0
국민행복당	6	2	0	1	1	0	2	0	0
기독교자유민주당	8	1	0	1	3	0	3	0	0
녹색당	3	0	0	0	2	1	0	0	0
대한국당	3	0	0	0	1	0	1	0	1
미래연합	2	1	0	0	0	0	0	0	1
불교경도화합통일연합당	4	1	0	0	1	2	0	0	0
정통민주당	7	0	0	1	2	2	1	0	1
진보신당	7	1	0	0	3	1	2	0	0
청년당	4	1	0	1	0	0	2	0	0
한국기독교당	2	0	1	0	0	0	1	0	0
한국문화예술당	1	0	0	0	0	0	1	0	0
한나라당	1	0	0	0	0	0	1	0	0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납 신고액 현황

정당명	후보 자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액별 후보자수							
		없음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합 계	188	162	11	4	8	2	1	0	0
새누리당	44	36	1	2	4	0	1	0	0
민주통합당	38	35	1	0	2	0	0	0	0
자유선진당	16	14	0	1	1	0	0	0	0
통합진보당	20	16	3	1	0	0	0	0	0
창조한국당	4	4	0	0	0	0	0	0	0
국민생각	7	7	0	0	0	0	0	0	0
가자!대국민중심당	7	7	0	0	0	0	0	0	0
국가계권친박연합	4	4	0	0	0	0	0	0	0
국민행복당	6	5	1	0	0	0	0	0	0
기독교자유민주당	8	8	0	0	0	0	0	0	0
녹색당	3	2	1	0	0	0	0	0	0
대한국당	3	3	0	0	0	0	0	0	0
미래연합	2	2	0	0	0	0	0	0	0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	4	3	0	0	0	1	0	0	0
정통민주당	7	4	2	0	1	0	0	0	0
진보신당	7	6	1	0	0	0	0	0	0
청년당	4	4	0	0	0	0	0	0	0
한국기독교당	2	1	1	0	0	0	0	0	0
한국문화예술당	1	1	0	0	0	0	0	0	0
한나라당	1	0	0	0	0	1	0	0	0

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현재납 신고액 현황

정당명	후보 자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액별 후보자수							
		없음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이상
합 계	188	186	1	0	0	0	1	0	0
새누리당	44	44	0	0	0	0	0	0	0
민주통합당	38	38	0	0	0	0	0	0	0
자유선진당	16	16	0	0	0	0	0	0	0
통합진보당	20	20	0	0	0	0	0	0	0
창조한국당	4	4	0	0	0	0	0	0	0
국민생각	7	7	0	0	0	0	0	0	0
가자!대국민중심당	7	6	1	0	0	0	0	0	0
국가계권친박연합	4	4	0	0	0	0	0	0	0
국민행복당	6	6	0	0	0	0	0	0	0
기독교자유민주당	8	8	0	0	0	0	0	0	0
녹색당	3	3	0	0	0	0	0	0	0
대한국당	3	3	0	0	0	0	0	0	0
미래연합	2	2	0	0	0	0	0	0	0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	4	4	0	0	0	0	0	0	0
정통민주당	7	7	0	0	0	0	0	0	0
진보신당	7	7	0	0	0	0	0	0	0
청년당	4	4	0	0	0	0	0	0	0
한국기독교당	2	2	0	0	0	0	0	0	0
한국문화예술당	1	1	0	0	0	0	0	0	0
한나라당	1	0	0	0	0	0	1	0	0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고액 최다 후보자

순 위	정당명	후보자명	신고액(천원)
1	가자!대국민중심당	구천서	4,707,915
2	새누리당	현영희	4,092,449
3	자유선진당	안대륜	3,829,220
4	국민생각	김승제	3,805,765
5	새누리당	윤기성	584,735
6	새누리당	신의진	522,519
7	자유선진당	강창규	515,944
8	자유선진당	김영주	433,246
9	자유선진당	문정림	418,916
10	새누리당	김인겸	399,040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신고액 최소 후보자

순위	정당명	후보자명	신고액(천원)
1	국민행복당	오인산	0
2	국민행복당	한영애	0
3	기독교당	고영석	0
4	미래연합	조민희	0
5	불교연합당	권오목	0
6	자유선진당	함영이	0
7	진보신당	티코노프블라디미르 (티코노프블라디미르)	0
8	청년당	오태양	0
9	통합진보당	강종현	0
10	통합진보당	황선	4

후보자 전과건수별 현황

정당명	후보 자수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수	전 과 건 수										
			1	2	3	4	5	6	7	8	9	10	11 이상
합 계	188	38	29	6	2	1	0	0	0	0	0	0	0
새누리당	44	0	0	0	0	0	0	0	0	0	0	0	0
민주통합당	38	8	5	3	0	0	0	0	0	0	0	0	0
자유선진당	16	1	1	0	0	0	0	0	0	0	0	0	0
통합진보당	20	11	9	1	1	0	0	0	0	0	0	0	0
창조한국당	4	0	0	0	0	0	0	0	0	0	0	0	0
국민생각	7	1	1	0	0	0	0	0	0	0	0	0	0
가자!대국민중심당	7	4	4	0	0	0	0	0	0	0	0	0	0
국가재건신당	4	1	1	0	0	0	0	0	0	0	0	0	0
국민행복당	6	2	2	0	0	0	0	0	0	0	0	0	0
기독교자유민주당	8	2	2	0	0	0	0	0	0	0	0	0	0
녹색당	3	1	1	0	0	0	0	0	0	0	0	0	0
대한국당	3	1	1	0	0	0	0	0	0	0	0	0	0
미래연합	2	0	0	0	0	0	0	0	0	0	0	0	0
불교정도화합동일연합당	4	0	0	0	0	0	0	0	0	0	0	0	0
정통민주당	7	2	0	0	1	1	0	0	0	0	0	0	0
진보신당	7	2	1	1	0	0	0	0	0	0	0	0	0
청년당	4	1	1	0	0	0	0	0	0	0	0	0	0
한국기독교당	2	1	0	1	0	0	0	0	0	0	0	0	0
한국문화예술당	1	0	0	0	0	0	0	0	0	0	0	0	0
한나라당	1	0	0	0	0	0	0	0	0	0	0	0	0

# 법 규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법 률 제 11374 호)  
2012. 2. 29. 공 포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區(自治區를 포함한다)·市(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郡(이하 “區·市·  
郡”이라 한다)”을 “자치구·시·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후단”을 “본문 후단”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  
장을 포함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을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  
시·군”이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  
지로 한다.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  
하고 있는 선원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부재자신  
고(이하 “선상부재자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  
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  
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  
장을 맡고 있는 선박

제38조제3항(중전의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선상부  
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리 또는 반  
의 장의,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  
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3호 중 “거소”를 “거소(제4  
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박의 명칭  
과 팩시밀리 번호를 말한다)”로 한다.

제38조제4항(중전의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제38조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는  
거소”를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  
우 선상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를 “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  
가”로,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를 “제4항에 따  
라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제4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자”라 하고,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선상투표자”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天災·地變 기타의”를 “천재지변,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第37條(名簿作成) 第4項 및 第38條(不在者申告)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

제5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정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6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6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3항 중 “선거인수”를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2조의4제4항 및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8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2조의5제2항제2호 중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제1항제4호”를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第96條(虛偽論評· 報道の 금지) 및 第97條(放送· 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 같다)”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9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 公表 또는 報道를 目的으로”를 “누구든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크기”를 “크기(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로, “질문내용”을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당해 選舉의 選舉日 후 6月”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 피조사자선정· 표본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에 제5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
  - 2.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⑧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9조제2항 중 “제60조의3제1항제6호· 제7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전화”로 한다.

제111조제1항 단서 중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를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으로 한다.

제149조의2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전단 중 “선거인에게 발송할”을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송할”로 한다.

제1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①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보낼 투표용지(이하 “선상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자에 대하여는 제154조제 2항을 준용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표지부분과 투표부분을 구분하고, 표지부분에는 선거인 확인란과 해당 선거구의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선상투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선장이 제1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선상투표용지의 규격과 게재사항, 선상투표용지 송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舉人은 不在者投票期間중”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부재자 투표기간 중”으로 한다.

제158조의2 및 제1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 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제3항 본문에 따른 입회인(이하 “입회인”이라 한다)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

여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7항에 따라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수신할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⑩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수신된 선상투표지의 투표부분은 절취하여 봉투에 넣고, 표지부분은 그 봉투에 붙여서 봉합한 후 선상투표자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한 선거인을 알 수 없는 선상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그 사유를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 ⑪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지 관리록에 선상투표지 수신상황과 발송상황을 적어야 한다.
- ⑫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 각까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선상투표지를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 ⑬ 선상투표의 투표절차,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팩시밀리의 기술적 요건,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및 선상투표지 관리록의 작성·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

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 1. 제3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에 기거하는 사람
- 3.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투표는 제158조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기관·시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제1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⑤ 선거인은 누구든지(제2항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한다) 제4항에 따른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⑥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

라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제158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하게 하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회송용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9조 단서 중 “居所投票”을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7조제2항 단서 중 “100미터”를 “50미터”로 한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不在者投票”을 “부재자투표(선상투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 1. 선상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제179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7호 중 “居所投票”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재자신고인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제158조의3제5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20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있어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158조의3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18조의1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제218조의14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화”를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로 한다.

제218조의30 및 제218조의31을 각각 제218조의34 및 제218조의35로 하고, 제218조의30부터 제218조의3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8조의30(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을 제한하거나 반납(이하 “제한등”이라 한다)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제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2.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사유, 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등의 제한등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의 절차, 반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과 회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여권법」을 준용한다.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제218조의32(국외선거법에 대한 영사조사) ①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

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법원 또는 검사가 영사에게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사에 대한 진술 청취의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④ 영사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조, 제50조 및 제161조의2부터 제164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영사가 검사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영사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조서, 진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 또는 영상녹화물을 즉시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8조의33(국외선거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제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해당 제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제외공관에 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

람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參觀人(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를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30조제5항 중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을 “선거 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①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상부재자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 4.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2. 제1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 3. 제15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 4. 제158조의2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 5. 제1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158조의2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41조제1항 중 “100미터”를 “50미터”로 한다.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재외투표소와 부재자투표소”를 “재외투표소·부재자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로 한다.

제247조제1항 중 “국외부재자신고”를 “국외부재자신고 및 선상부재자신고”로 한다.

제2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6조·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 2.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제256조제2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제59조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단서를 위반하여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 마. 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56조제2항제1호파목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으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257조제2항 중 “제261조제6항”을 “제261조제6항제1호·제6호”로 한다.

제26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70조제3항·제71조제10항·제72조제3항(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제1항(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3제4항 또는 제2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4. 제8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6조를 위반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음식물·물품 가액”을 각각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전”을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제261조제6항제6호 중 “제113조”를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로 한다.

제268조제1항 본문 중 “6월”을 각각 “6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제272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제272조의3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제158조의3·제179조제4항제10호 및 제20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상투표에 관한 적용례) 선상투표자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서 한다.

제4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 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를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 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경상북도포항시 일부를 분할하여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관리는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고,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연기군의 관할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충청북도청원군 부용면 일부지역과 충청남도공주시 의당면·장기면·반포면 각 일부 지역은 각각 하나의 면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 경기도 파주시갑·을선거구, 경기도 이천시선거구, 경기도 여주군양평군가평군선거구, 강원도 원주시갑·을선거구, 충청남도 공주시선거구,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선거구,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선거구, 전라남

도 담양군합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경상남도 사천 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이 부칙 제8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에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부칙 제8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9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 제 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제11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확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선거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2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제59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과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지역구 : 246)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서울특별시(지역구 : 48)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성동구갑선거구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성동구을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송정동, 용답동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갑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중랑구갑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중랑구을선거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갑선거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1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을선거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제3동
도봉구갑선거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구을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노원구을선거구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6·7동

노원구병선거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역촌동, 진관동
서대문구갑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서대문구을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천구갑선거구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천구을선거구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갑선거구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4동, 화곡제6동, 화곡제8동, 우장산동, 발산제1동
강서구을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구로구갑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구로구을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가리봉동
금천구선거구	금천구 일원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갑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관악구갑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신림동
관악구을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을선거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을선거구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길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지역구 : 18)	
중구동구선거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서구선거구	서구 일원
영도구선거구	영도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2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구을선거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덕천제2동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 기장군갑선거구	해운대구 중제1동, 우제1동, 우제2동,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해운대구 기장군을선거구	해운대구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기장군 일원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를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대구광역시(지역구 : 12)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동구갑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동구를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 3·4동, 공산동
서구선거구	서구일원
북구갑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북구를선거구	북현1동, 북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수성구갑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 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를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를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병선거구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성군선거구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 : 12)	
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옹진군 일원

남구갑선거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남구을선거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선거구	연수구 일원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을선거구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평구갑선거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부개2동, 일산동, 십정1동, 십정2동, 산곡3동
부평구을선거구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을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서구강화군갑선거구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강화군을선거구	서구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강화군 일원
광주광역시(지역구 : 8)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동천동
서구을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남구선거구	남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북구을선거구	임동,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오치1동, 오치2동, 건곡동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산구을선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 : 6)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을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선거구	유성구 일원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 : 6)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남구을선거구	달동, 삼산동, 아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북구선거구	북구 일원
울주군선거구	울주군 일원
세종특별자치시(지역구 : 1)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경기도(지역구 : 52)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일원
수원시을선거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평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행궁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서둔동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 영통구 일원

성남시수정구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분당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안양시만안구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양시동안구갑선거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동안구을선거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천시원미구갑선거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원미구을선거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소사구선거구	부천시 소사구 일원
부천시오정구선거구	부천시 오정구 일원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광명시을선거구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운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북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양주시동두천시선거구	양주시 일원, 동두천시 일원
안산시상록구갑선거구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상록구을선거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단원구갑선거구	와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산시단원구을선거구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고양시덕양구갑선거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덕양구을선거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일산동구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고양시일산서구선거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
의왕시파천시선거구	의왕시 일원, 파천시 일원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도농동, 지금동, 별내동
오산시선거구	오산시 일원
화성시갑선거구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남양동
화성시을선거구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군포시선거구	군포시 일원
하남시선거구	하남시 일원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용인시갑선거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마북동, 동백동
용인시을선거구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상하동, 보정동, 상현2동
용인시병선거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성북동
안성시선거구	안성시 일원
김포시선거구	김포시 일원
광주시선거구	광주시 일원
포천시연천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이천시선거구	이천시 일원

여주군양평군가평군 선거구	여주군 일원, 양평군 일원, 가평군 일원
강원도(지역구 : 9)	
춘천시선거구	춘천시 일원
원주시갑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주시을선거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릉시선거구	강릉시 일원
동해시삼척시선거구	동해시 일원, 삼척시 일원
속초시고성군 양양군선거구	속초시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홍천군횡성군선거구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태백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선거구	태백시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 일원
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선거구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 : 8)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흥덕구갑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모충동, 산남동, 분평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성화개신죽림동
청주시흥덕구을선거구	운천신봉동, 복대제1동, 복대제2동, 가경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1동, 강서제2동
충주시선거구	충주시 일원
제천시단양군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청원군선거구	청원군 일원(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보은군옥천군 영동군선거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증평군진천군 괴산군음성군선거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괴산군 일원, 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 : 10)	
천안시갑선거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신안동, 쌍용2동
천안시을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3동, 백석동, 부성동
공주시선거구	공주시 일원(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보령시서천군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아산시선거구	아산시 일원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 금산군선거구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부여군청양군선거구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당진시선거구	당진시 일원
전라북도(지역구 : 11)	
전주시완산구갑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완산구을선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주시덕진구선거구	전주시 덕진구 일원
군산시선거구	군산시 일원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응포면, 상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을선거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선거구	정읍시 일원
남원시순창군선거구	남원시 일원, 순창군 일원
김제시완주군선거구	김제시 일원, 완주군 일원
진안군무주군 장수군임실군선거구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임실군 일원
고창군부안군선거구	고창군 일원, 부안군 일원

전라남도(지역구 : 11)	
목포시선거구	목포시 일원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순천시곡성군선거구	순천시 일원, 곡성군 일원
나주시화순군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광양시구례군선거구	광양시 일원, 구례군 일원
담양군합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담양군 일원, 합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고흥군보성군선거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강진군영암군선거구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영암군 일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무안군신안군선거구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경상북도(지역구 : 15)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시선거구	경주시 일원
김천시선거구	김천시 일원
안동시선거구	안동시 일원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구미시을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선거구	영주시 일원
영천시선거구	영천시 일원

상주시선거구	상주시 일원
문경시예천군선거구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경산시청도군선거구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고령군성주군 칠곡군선거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군위군의성군 청송군선거구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영덕군 봉화군울진군선거구	영양군 일원, 영덕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 : 16)	
창원시의창구선거구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성산구선거구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마산합포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마산회원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창원시진해구선거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성지동, 봉안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통영시고성군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남해군 하동군선거구	사천시 일원,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김해시갑선거구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밀양시창녕군선거구	밀양시 일원, 창녕군 일원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선거구	양산시 일원

의령군합안군 합천군선거구	의령군 일원, 합안군 일원, 합천군 일원
산청군함양군 거창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 : 3)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시을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법 률 제 11375 호)  
(2012. 2. 29. 공 포)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①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5회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의 공익광고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법 률 제 11376 호)  
2012. 2. 29. 공 포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비를 납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가 경선의 종료로 그 신분이 상실되어 해산되는 경우
2.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국회의원 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제40조제4항제4호 중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 견서 또는”을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정당과 국회의원후원회가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라 하는 회계보고의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하는 회계보고를 말한 다음의 기한까지”를 “당비·후원금을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4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제51조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내지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등)”을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그 비용을 반환·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를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인계기한”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반환·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를 “제1항에 따라 인계하여야 하는 반환·보전비용을 그 인계기한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비영수증 및 정치자금영수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받은 당비 및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7호)  
2012. 3. 2. 공 포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②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9항 및 제1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선거운동정보와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어깨띠·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제4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에 따르고,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에 따른다.

③ 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하고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생년월일(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 2. 이의신청내용

④ 각급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나 기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같은 조 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4 조 제목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을 “(여론조사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8조제7항제1호에 따른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08조제7항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 중 “평균한 가격”을 “평균한 가격 또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가격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가 정

한 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제136조의30부터 제136조의32까지를 각각 제136조의31부터 제136조의33까지로 한다.

제136조의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30(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통지) ① 중앙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18조의30제2항·제3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요청대상 및 제한·보관 기간
2. 법 제218조의31제2항에 따른 입국금지 통보대상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 ③ 중앙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136조의31(중전의 제136조의30) 본문 중 “제218조의30제2항”을 “제218조의34제2항”으로 한다.

별표 3에 8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상한액	부과기준
8의2.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한 정보의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61조 제3항제4호 ·법 제82조의4제4항	300	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00나. 이행기간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 50

별표 3의2 및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9.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내용			비고
			구분	이의제기내용	결정사항	

별표 4의 서식표 중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주: 1.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말한다.
2. “구분”란에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적는다.
3. “이의제기내용”란에는 이의제기서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하여 적는다.

별표 4의 서식표 중 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투표소)·(개표소) (공고)·(통지)가. 설치시

명칭	소재지(시설명)	투표구 관할구역	비고

- 주: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는 “투표구 관할구역”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나) 중 주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되,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

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가) 중 학력란의 “학력”을 각각 “학력(수학기간)”이라 하고, 같은 서식의 주 2 중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수료·중퇴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를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다)를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로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중전의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다)) 중 “(제60조의3제1항제7호)·(제82조의4제1항제3호)”를 “제59조제2호”로 한다.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 및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의(가)의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 3부터 주 6까지를 각각 주 4부터 주 7까지로 하고, 같은 서식에 주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투표구명”란에는 부재자투표는 “국내부재자투표”로, 재외투표는 “재외투표”로 기재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부재자투표는 “국내부재자투표”로, 재외투표는 “국외부재자투표”로 기재하되, “투표용지교부수”란에는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 접수수”를, 재외투표는 “재외투표 발송·접수록에 의한 접수수”를 기재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의(가)의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 2부터 주 7까지를 주 3부터 8까지로 하고, 주 4(중전의 주 3) 중 “확정된 선거인수에서 확정된 부재자신고인수를 뺀 선거인수”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선거인수에서

확정된 부재자신고인수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뺀 선거인수”로 하며, 같은 서식에 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투표구명”란에는 부재자투표는 “국내부재자투표”로, 재외투표는 “재외투표”로 기재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부재자투표는 “국내부재자투표”로, 재외투표는 “국외부재자투표”로 기재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의(라)의 별지 대통령선거용 및 별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용 중 주 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재자투표수, 재외투표수(국외부재자투표수+재외선거인투표수)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따로 그 수를 ( )안에 부재자투표수, 재외투표수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의(마) 중 주 2를 주 3으로 하고, 주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에 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부재자투표수, 재외투표수(국외부재자투표수+재외선거인투표수)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따로 그 수를 ( )안에 부재자투표수, 재외투표수 순으로 기재한다.
2.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부재자투표수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따로 그 수를 ( )안에 기재한다.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가) 및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나)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의(사) 중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주: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를 적습니다.
2. 법 제272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승인서 사본을 붙이지 않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자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및 양태	부과기준액	부과기준액 가감기준
1. 법 제26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위반정도 및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이 경우 부과금액은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미만이거나 50배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	
3.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받거나 법 제26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별표 3의3]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정기준

감정대상	감정사유	부과 기준액	부과기준액 감정기준
<p>1. 법 제26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자수한 경우</p> <p>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p> <p>나.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p> <p>다.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p>	<p>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 고발 등 조치(수사기관이 알게 된 후 기소 또는 기소유에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까지 자수하였으나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p>	<p>제공받은 가액의 5배</p>	<p>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감경할 수 있음.</p>
	<p>나. 고발 등 조치 후 자수한 경우</p>	<p>제공받은 가액의 10배</p>	
<p>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고 자수한 경우</p>	<p>가. 제1호의 감정사유 가목과 같음.</p>	<p>제공받은 가액의 2배</p>	
	<p>나. 제1호의 감정사유 나목과 같음.</p>	<p>제공받은 가액의 5배</p>	
<p>3.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받거나 법 제26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수한 경우</p>	<p>가. 제1호의 감정사유 가목과 같음.</p>	<p>제공받은 가액</p>	
	<p>나. 제1호의 감정사유 나목과 같음.</p>	<p>제공받은 가액의 2배</p>	
<p>주 : “고발 등 조치”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함.</p>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서**

요청인 인적사항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요청사항	위법정보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주소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요청내용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위법게시물의 (삭제)·(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①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경영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귀중

주: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등 요청사항 통보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경영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요청일자	
요청내용	(삭제) · (취급의 거부 · 정지 · 제한)
통보사유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함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위법게시물 등의 (삭제) · (취급의 거부 · 정지 · 제한) 요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3호의2서식]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제기서**

이 의 제기자	(정당명)· (후보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제기대상 여론조사	공표·보도매체			
	공표·보도일자			
	공표·보도내용			
	이의제기 내용 및 이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0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붙 임 : 이의제기 이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이의제기자

[인]

○○당 [인]  
대표자○○○ [인]  
후보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정당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3. 이의제기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 시·도위원회 :

○ 구·시·군위원회 :

공관명	공관명부 접수자수			수정에 의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비고
	계	등재자	미등재자	증	감	계	남	여	
합 계									

주: 이 통보서에서는 별지 <재외선거인명부 수정상황>을 작성·첨부한다.

-----  
<별지>

재외선거인명부 수정상황

접 수 공관명	공관명부 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 주: 1. 수정사유란은 중앙위원회가 수정한 내역을 기재한다.  
 2.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명부의 등재자를 재외선거인명부에 미등재한 경우 수정내용란의 수정전란에는 “등재자”로, 수정후란에는 “미등재자”로 표기하고,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명부의 미등재자를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한 경우 수정내용란의 수정전란에는 “미등재자”로, 수정후란에는 “등재자”로 표기한다.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시·도 명	구·시· 군명	① 공관명부 접수자			수정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④인 구 수 (연 월 일 현재)	인구수에 대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비율(%)	비 고
		계	등재자	미등재자	증	감	구분	계	②공관 접수 등재자	③구·시 ·군 접수 등재자			
							남						
							여						
							계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 란은 당초 통보된 공관명부 접수자의 수를 기재한다.
  - ② 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공관명부 등재자의 수를 기재한다.
  - ③ 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 중 해당 구·시·군의 장이 접수한 사람의 수를 기재한다.
  - ④ 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3. 이 통보서에는 별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상황>을 작성·첨부한다.

<별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상황

접 수 기관명	공관명부 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주: 1. 수정사유란은 구·시·군의 장이 수정한 내역을 기재한다.

- 2.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 등재자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미등제한 경우 수정내용란의 수정전란에는 “등재자”로, 수정후란에는 “미등재자”로 표기하고,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 미등재자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제한 경우 수정내용란의 수정전란에는 “미등재자”로, 수정후란에는 “등재자”로 표기한다.

◇ 개 정 이 유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가. 자동 동보통신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법률에 맞게 옮겨 규정함(안 제25조의4 신설).
- 나. 후보자가 위법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등 요청 및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안 제45조의3제2항).
- 다. 후보자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의제기 서식을 마련함(안 제48조의4 제2항·제3항).
- 라.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 선거에서 산정한 가격에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한 가격을 추가함(안 제51조의2제2항).
- 마.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하지 않도록 함(안 제51조의2제3항).
- 바. 여권발급 제한요청이나 외국인의 입국금지 요청 대상 결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6조의30 신설).

○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8호)  
2012. 3. 2. 공 포

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공익광고의 시간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의 공익광고 시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2.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②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기한”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납부기한”을 “독촉기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 정 이 유

정책선거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도입 등 정당법 개정(2012. 2. 27.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가. 지상파방송사는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규정된 주시청시간대에 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함(안 제26조).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9호)  
2012. 3. 2. 공 포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제44조의 제목“(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당의 보조금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의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비공제 처분대상자”라 한다)”를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공제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납부기한”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 기기한”으로 한다.

제44조제5항 중 “비공제 처분대상자”를 “과태료 처분대상자”로, “납부기한”을 “독촉기한”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무 정 액 영 수 증

(앞면)

The diagram shows a rectangular form with a total width of 250 mm and a height of 90 mm. The form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a table on the left (width 100 mm) and a text area on the right (width 150 mm). There are 5 mm margins on the top, bottom, and right sides. A 5 mm margin is also shown at the bottom right corner.

NO. _____		
무정액영수증원부		
금 액	금 원 정 ( ₩ )	
발 행 연 월 일		
기부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 업	
	전 화 번 호	

취급  
자인

NO. \_\_\_\_\_

무정액영수증  
금 원정(₩ )

이 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  
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  
금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뒷면)

- 주 1. 이 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2.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업자등록번호 : 138-83-01632)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
-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정액영수증

(앞면)

The diagram shows a rectangular form with a total width of 250 mm and a total height of 90 mm. The form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by a vertical dashed line. The left section is 100 mm wide and contains a table for donor information. The right section is 150 mm wide and contains fields for amount, date, and donor name/address. A '취급자인' (Service Provider) label is placed in the center between the two sections. Dimensions are indicated with arrows: 250 mm for the total width, 90 mm for the total height, 100 mm for the left section, and 150 mm for the right section. A 5 mm margin is shown at the top and bottom right.

NO. _____		정액영수증원부	
금 액	금	원 정 ( ₩ )	
발 행			
연 월 일			
기부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 업		
	전 화 번 호		

NO. \_\_\_\_\_

정액영수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취급  
자인

(뒷면)

- 주 1.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 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업자등록번호 : 138-83-01632)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
-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별지 제46호서식](규칙 제45조제5항 관련)

<b>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b>			
수신처 :			
문 서 번 호		요 구 일 자	
요 구 기 관 명			
요 구 자	근 무 부 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책 임 자			
요 구 내 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사 용 목 적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확인·조사	
	요구하는 거래 정보 등의 내용		
통 보 유 예	유 예 기 간		
	유 예 사 유		
특 이 사 항			
<b>○○○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b>			

- 주 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1을 의미합니다.
- 2.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통보유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재)합니다.

◇ 개 정 이 유

과태료 부과·징수규정 등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처리와 관련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함(안 제44조)
- 다.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함(안 제45조제5항, 안 별지 46호서식).
- 라. 정치자금영수증 뒷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16호·제17호서식).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0호)  
2012. 3. 2. 공 포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공직선거법」(법률 제11374호) 부칙 제4조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획정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2와 같다.

제5조의2제4항 단서 중 “구·시·읍·면의 장”을 “구·시·군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충청남도란과 별표 2 중 경기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란 및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사무소소재지표

시·도명	위원회명	관할구역	사무소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천안시서북구	천안시서북구
	천안시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천안시동남구	천안시동남구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주시	공주시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	보령시	보령시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아산시	아산시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산시	서산시
	태안군 선거관리위원회	태안군	태안군
	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금산군	금산군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	연기군	연기군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논산시	논산시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	계룡시	계룡시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	당진시	당진시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여군	부여군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서천군	서천군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	홍성군	홍성군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청양군	청양군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군	예산군

[별표 2]

1선거구 구역이 2개이상 구·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

시·도명	국회의원지역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선거구 의왕시·과천시선거구 포천시·연천군선거구 여주군·양평군·가평군선거구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선거구 서산시·태안군선거구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선거구 부여군·청양군선거구 홍성군·예산군선거구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선거구 나주시·화순군선거구 광양시·구례군선거구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고흥군·보성군선거구 장흥군·강진군·영암군선거구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무안군·신안군선거구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	문경시·예천군선거구 경산시·청도군선거구 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 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선거구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 밀양시·창녕군선거구 의령군·함안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함양군·거창군선거구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별표 2-2]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획정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표

시·도명	국회의원지역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강서구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갑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갑선거구 서구·강화군을선거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병선거구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	수원시권선거관리위원회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 개 정 이 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개이상 구·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확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가. 1선거구 구역이 2개이상 구·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지정(별표 2)
- 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확정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지정(별표 2-2).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71호)  
2012. 3. 2. 공 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사이버 홍보”를 “온라인 홍보”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 까지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34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제35호 부터 제4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4.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다 음과 같이 한다.

시·도명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명	사무국의 수
경기도	수원시정안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영통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광명시, 평택시, 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군, 파주시, 포천시, 이천시, 용인시처인구,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안성시, 김포시	39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천안시동남구,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11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10

경상 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 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진해구, 진주시, 통영시, 사천 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함안군, 양산시, 거창군	14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 정 이 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조정에 따라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 위원회를 변경하고, 업무이관 등을 통해 전산·정보업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위원회 변경(경기도 양평군 삭제, 경기도 이천시 및 충청남도 연기군 추가, 당진군을 당진시로 변경, 전라남도 담양군 및 경상남도 하동군 삭제)
- 전산업무에 대한 보안강화 및 정보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보관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함. 1선거구 구역이 2개이상 구·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지정(별표 2)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 제394호)  
2012. 3. 2. 발 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중 “사이버 홍보”를 “온라인 홍보”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고, 제7호 중 “정치포털사이트 구축·운영 및 관리”를 “선거홍보사이트 구축·운영”으로 하며, 제6호 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5호 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9조제6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제395호)  
(2012. 3. 2.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후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사무내용 중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후보담당관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위원장 결 재	전 결 권 자				
				상임 위원	사무 총장	사무 차장	공보관	후 보 담당관
13	시민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권장·지원	기본계획수립					○	
		활동지원						○
		결과보고					○	
14	선거관리보 발간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원고심사						○
		자료수집·정 리 및 배부						○

○ 정보화담당관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위원장 결 재	전 결 권 자				
				상임 위원	사무 총장	사무 차장	기 획 조정실장	정 보 화 담 당 관
10	인 터 넷 홈페이지 운 영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인터넷 홈페이지 콘텐츠 및 게시판 등 관리						○
		인터넷 홈페이지 신기술 적용 등 시스템 관리						○
		인터넷 주소 및 도메인 운영·관리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평가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 제396호)  
2012. 3. 21. 발 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사무를 감독함에 있어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상임위원의 직무 등) ①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처의 사무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1. 위원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무
  -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무
-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 해당 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의안과 함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결재사항의 경우 해당 사무 담당 공무원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임위원은 그 사무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사무총장의 직무 등)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조제1항에서 위임된 상임위원 결재사항의 경우 해당 사무 담당 공무원은 상임위원의 결재를 받기 전에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총전의 제4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실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구분한다.
- ② 상임위원의 결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는 실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구분한다.
- ③ 사무총장의 결재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는 사무차장, 실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구분한다.

제10조(총전의 제8조) 중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를 “제8조 및 제9조에”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질의회답

### [공직선거법]

#### ○ LED 네온보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질의 회답



【문】 2012년 4월 11일 총선 및 각종 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용품으로 선거사무원들이 몸에 지니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지와 선거비용 보전 가능여부(후보자 구매, 입차)에 대해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사무원들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선거용품(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맞는 크기로 제작) 중에서, 기존의 피켓 등은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 및 기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였으나 아래 용품은 쉽게 쓰고 지울 수 있으면서 주·야간에도 유권자들에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LED보드로 휴대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 LED 네온보드 개요

- 특수펜으로 누구나 손쉽게 쓰고 지울 수 있으며 다양한 문구나 디자인이 고휘도 LED와 어울려 다양한 네온사인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 초경량의 두께 8mm의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휴대가 용이함.
- 배터리와 AC아답터를 겸용으로 다양하게 홍보 가능(한번 충전후 배터리 사용시간 10~15시간)
- 사이즈 및 중량: LM-A4 228mm x 307mm x 8mm 0.5Kg  
LM-45A 450mm x 568mm x 8mm 1.5 Kg

#### [참고용 이미지]

어깨 걸이(LM-45A)	(LM-45A)
	
양면 사용 가능	



(2012. 2. 10. 송현상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사무원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 네온보드를 「공직선거법」 제68조의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LED 네온보드의 입차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2012.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 인터넷언론사의 예비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관한 질의회답

【문】 뉴스토마토는 토마토TV(케이블 방송)를 자회사로 둔 인터넷 언론매체입니다. 뉴스토마토에서는 홈페이지(www.newstomato.com)를 통해 4. 11. 총

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과 대담, 토론, 인터뷰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2월말부터 3월말 경까지 격주로 사옥 스튜디오에 초청하여 정치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정견을 듣거나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활자화는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기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방송(토마토TV)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활자화 된 기사와 함께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 기사에 동영상으로 제공한 사례입니다.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221541>

이런 형태의 기사에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출연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012. 2. 10. 뉴스토마토 박수현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을 초청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2.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문】** 우리청은 시·도와 공동주관으로 매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일(9. 22)에 맞추어 16개 시·도 민방위대원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9. 21.(금) 개최예정인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사개최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제37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 일 시 : 2012. 9. 21(금) 14:00~15:00 예정
  - 주 관 : 소방방재청, 전라북도, 익산시
  - 장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실내체육관
  - 참석대상 : 공무원, 민방위대원 등 10,000여명
    - 민간인 : 16개 시·도 민방위대원,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빈 : VIP,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
- 주요 행사내용
  - 기념행사
    - 기념사(소방방재청장), 환영사(전라북도지사), 치사(대통령) 등
    - 유공자포상 :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등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없음)
      - ※ 표창장 및 부상(2만원 상당 손목시계)
  - 민방위 종합훈련 및 시·도 경진대회
    - 민방위사태수습 기능경진 대회(16개 시·도 민방위대원 대표 2~3명)
      - ※ 경진대회 우수 시·도 표창 및 시상금 지급 (수여자 : 소방방재청장)
    - 민방위사태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 (시간 : 11:00~16:30)
      - ※ 익산시에서 참여인원 중식 제공(1인당 8,000원 상당의 도시락)
      - ※ 훈련내용
        - 2010년도에는 테러진압·화학전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국지전 도발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 종합훈련 참여자는 매년 50~100여명이며, 훈련 참여자에 관람자는 제외됨.
  - 향후계획 : 행사 추진단 구성·운영 : '12. 4월 중(소방방재청, 전북도, 익산시)
    - (2012. 2. 10. 소방방재청장 질의)

**【답】** 귀문의 경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면

서 유공자와 경진대회 우수 시·도에 표창(부상 포함)하거나 민방위 종합훈련에 참여하는 자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2.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후보자 정보 제공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터넷 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문】 다음과 같이 본사(라이크휴먼)에서는 4. 11.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앱 제작시 광고의 허용범위에 대한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앱에서 제공되는 후보자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내용을 연동하여 보여주는 것이고, 정보는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임.

- 제작할 스마트폰 앱 이름 : 나는 투표한다.
- 앱 소개 : 현재 위치한 곳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의 정보를 보여주는 앱
- 라이크휴먼 소개 : 현재 junApps.com 이라는 아이티 관련 인터넷 뉴스사이트 운영, 인터넷 뉴스사이트로 등록되어 있음.
- 질의사항 :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후보자정보 광고 가능여부

※ 아래 첫 번째 광고 로딩화면이 나타나며, 하단의 “현재지역 후보자 전체보기”를 누르면 해당 지역 전체 후보자의 사진·성명·소속정당이 나타남.



(2012. 2. 8. 라이크휴먼 대표 전철환 질의)

【답】 선거운동기간중에 귀문과 같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제82조의7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이 경우 광고에는 광고주명과 선거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할 것임.

(2012.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약칭 당명 사용에 따른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관한 질의 회답

【문】 다음사항을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제150조제5항제2호에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정당 중에서 민주통일당은 약칭인 ‘통일당’이 함께 등록되어 있고, 새희망노인권익연대는 약칭이 ‘노인연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주통일당이 ‘통일당’ 약칭으로 공직선거에 나가고, 새희망노인권익연대가 ‘노인연대’라는 약칭으로 공직선거에 나갈 경우에 투표용지의 정당 게재순위에서 통일당과 노인연대 중에서 어느 당이 먼저 게재 되는지요.

(2012. 2. 8. 이창현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50조제5항제2호의 “정당의 명칭”에는 정당의 약칭은 포함되지 아니함.

(2012.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질의회답

【문】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을 근거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

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이 필요함.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면,

1.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바,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신고의 의무가 없는지 여부
2.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법 제10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여론조사의 경우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데 그 응답 결과를 게시하는 것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는바, 페이스북, 트위터 사용자나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 결과물을 게시하고 이를

리트윗, 공유 등의 방식을 통해 퍼나르거나 확산시키는 행위가 위의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2012. 2. 8.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김광림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적용을 받을 것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등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을 것임.

(2012. 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스마트 휴대폰에 내장된 인터넷전화를 활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질의회담**

**【문】** KT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 휴대폰(갤럭시탭 8.9)에는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 독립적으로 내장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20명씩 나눠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스마트 휴대폰에 총 1,000명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발송방법은 20명씩 선택하여 전송버튼을 누르면 같은 내용으로 20명에게 동시에 발송되고 이를 순차적 방법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또한 스마트 휴대폰 인터넷전화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는 인터넷전화처럼 컴퓨터에 기반하여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휴대폰에 인터넷전화 모듈이 출고 때부터 내장되어 있고 유선 인터넷전화와 기술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 스마트 홈패드란



- 스마트폰은 PDA에 휴대폰을 결합한 형태로 이동통신사업자의 010 번호를 부여 받아 개통해서 사용합니다.
- 스마트 홈패드는 PDA에 인터넷전화를 결합한 형태로 통신사업자인 KT의 070번호를 부여 받아 개통해서 사용합니다.

□ 스마트 홈패드 통화 방식



인터넷전화 핸드셋과 스마트 홈패드에는 통신사업자의 070 인터넷전화번호가 부여되고 고정장치와는 Wi-Fi 라는 무선랜 접속방식을 통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고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 인터넷전화는 통신사업자의 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에 기반하여 동작됩니다.

(2012. 2. 10. 이인철 질의)

【답】 귀문과 같이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 이하의 수신대상자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때에

는 전송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12. 2.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방송 전환 홍보사업에 관한 질의회답

【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는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정된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인해 TV방송을 보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국민 홍보 및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접근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노인·장애인 등이 조기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4. 11) 및 대통령선거(12. 19)가 있는 금년(2~12월)에 추진하는 찾아가는 면대면 홍보 사업(마을이장 설명회 등) 수행 시 다음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대국민 디지털전환 정부지원 홍보 개요〉

- 제목 : 찾아가는 면대면 홍보
- 대상 : 농·어촌지역의 마을이장, 전국 독거노인 돌보미, 장애인 협회 등
- 기간 : 2012. 2. ~12.
- 주요내용
  - 시장·군수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마을이장 설명회 일정 및 장소 협조 요청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준비사항, 정부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 설명
  - 설명회 참석자에 대한 디지털전환 기념품(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증정

1. 선거운동기간을 포함하여 금년 2월부터 올해말 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에서 농·어촌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정부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시·군(읍·면)에 문서 또는 구두로 마을이장을 참석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읍·면)의 마을이장을 참석하게 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 : 방통위가 디지털방송 전환 업무지원을 위해 지역 전파관리소에 설치한 조직임

2.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설명회에 참석한 마을이장, 독거노인돌보미 등에게 디지털전환 홍보문구가 삽입된 홍보물(5천원 상당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인데, 기념품 제공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3.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농·어촌 지역의 마을이장 설명회에 참석하여 디지털전환 협조를 당부하는 기념사를 할 수 있는지?

(2012. 2. 1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질의)

【답】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설명회를 개최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012.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예비후보자의 인터넷생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문】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의 관심, 취미, 개인사 등을 주제로 대담형식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생방송으로 송출이 가능한지 여부

- 이용사이트 : 유튜브, 유튜브립, 올레온에어 등
- 촬영장소 : 선거사무소 내
- 참석자 : 일반 유권자 2~3명, 보좌진 2~3명

및 예비후보자

○ 시청방법 : 예비후보자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이트 링크

○ 진행형식 : 참석자들이 예비후보자에게 질의 후 대답

2. 같은 방식으로 예비후보의 정견, 정책 등을 주제로 생방송 가능 여부

3. 1, 2 사항이 가능한 경우 생방송에 참여한 유권자가 예비후보자 대한 지지발언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예비후보자가 길거리에서 만난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12. 2. 13. 국회의원 김성동 질의)

【답】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12.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명예퇴직 공무원의 입후보에 관한 질의회답

【문】 1. 「공직선거법」제53조제4항은 “사직원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직원의 종류 또는 범위를 당해 법률에서 직접 제한하거나, 하위 규정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명예퇴직원도 하나의 사직원이므로 “명예퇴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 2007년 이후 수시 명예퇴직이 허용되어, 명예퇴직 희망자가 “수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 의원면직과 명예퇴직간 행정처리 시기상의 차이가 없어졌음. “수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 「공직선거법」제5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로 간주될 수 있는지?

- 3. 1994. 10. 7.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자료에 의하면, “명예퇴직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때”를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실 명예퇴직자의 경우, 2011. 1. 11.자로 명예퇴직원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우리실이 1. 12.자로 명예퇴직 결정을 한 경우, 실제 명예퇴직일이 1. 18.인 경우에도, 상기 중앙선거관위 해석에 따라, “명퇴를 결정한 1. 12.자”를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실제 사례) 명예퇴직원 접수(1. 11.) → 명예퇴직 결정(1. 12.) → 행안부 명예퇴직 임용제청(1. 16.) → 명예퇴직 발령(1. 18.)

(2012. 2. 1. 국무총리실장 질의)

【답】 귀문의 경우 명예퇴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12.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예비후보자의 당내경선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 가. 선거인단 접수방법(모바일 접수, 일반전화, 인터넷신청)과 콜센터번호를 명함 뒷면에 게재하여 배포할 경우 적법한 방법인지?
  - 나. 위 사항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 다. 선거인단 모집방법을 게재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할 경우 배포 가능한 자의 범위는?
- 2. 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선거인단 접수방법(모바일 접수, 일반전화, 인터넷신청)을 기록한
  - 가. 명함 크기의 별도 용지를 배포하는 경우 가능한지?
  - 나. 예비후보자 측의 사람이 당내경선 과정의 선거인단 모집방법을 지역주민에게 일반

A4용지 크기의 복사지로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한지?

- 3. 당내경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총 5회에 포함되는지? (2012. 2. 13. 국회의원 김영록 질의)

【답】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명함에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방법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그 밖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에 포함될 것임.

(2012. 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활동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문】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의 총·대선 지방분권정책 공약화 요구와 관련한 아래 활동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활동 내용	세부 내용
1. 지방분권추진단체 가입 또는 설립	지방분권 추진 운동(시민)단체 가입 지방분권 추진 운동단체 설립
2. 지방분권정책 공약화	서면 등 공약요구서 발송 공약화를 위한 후보자 서명 요구 활동
3. 지방분권 공약 채택자 지지운동	공약 채택 후보자 지지선언(후보자 명기)
	공약 채택 정당에 대한 지지선언(정당 명기) SNS를 활용한 후보 및 정당 지지운동

4. 지방분권 공약 비채택자 낙선 운동	공약 비채택 후보 낙선운동(후보자 명기)
	공약 비채택 정당 낙선운동(정당 명기)
	SNS를 활용한 후보 및 정당 낙선 운동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2012. 2. 15.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질의)

- 【답】 1. 활동 내용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활동 내용 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  
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지지·낙선운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또는 제87조에 위반될 것임.  
(2012. 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정당의 정기간행물 작성·배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새누리 VISION은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의장 :  
국회의원 김태환)에서 발행하는 새누리당 정기간행물(소식지)입니다.  
2. 새누리 VISION은 정당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귀감이 되는 이야기를 함께  
담아 전국 새누리당 지방자치단체장, 자당 국  
회의원, 청와대, 정부 그리고 12,000여명의 중  
앙위원들에게 격월로 우편 및 택배의 방법으로  
배부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종합매체입니다.  
※ 청와대 및 정부 : 각 부처마다 1부 배부  
3. 금번 3월호 제작에 들어가면서 2012. 4. 11. 예  
비후보님들의(시·도별 1인 정도, 총 20~25명)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이력사항, 정치활동사항,  
공약사항을 보도하고자 합니다.  
※ 150페이지 지면으로 발행되며, 그 중 예비후  
보자와 관련한 사항은 한명의 예비후보자  
당 2페이지로 정도로 하여 총 40~50페이지  
분량으로 게재할 계획에 있음.

4. 위와 같은 본 정기간행물(격월간 3월호)에 위  
"3"의 내용을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선거법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 새누리 VISION은 1·3·5·7·9·11월에  
발행·배부됨(3월호는 2. 25.경 발송).  
(2012. 2. 15. 새누리 VISION 발행인 이광우 질의)

- 【답】 정당이 귀문의 정기간행물을 중앙위원들을 주된  
배부 대상으로 하면서 일부를 소속 국회의원·지  
방자치단체장과 유관기관 등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2. 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예비후보자 등의 외국대학교 연구경력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등의 외국대  
학교 연구경력 게재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위원회 질의내용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명함, 후보  
자 등록후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의 홍보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경력사항으로 게재할 수  
있는지?  
-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박사전(前) 과정이수  
(’91~’92)  
- 옥스퍼드대학교 박사후(後) 과정이수(’93~’94)  
※ 예비후보자의 최종학력은 서강대학교 철학  
박사임.  
2. 우리위원회 의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외국대학  
에서의 연구경력과 관련하여 연구기간·연구  
과정명 및 그 직위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  
이나,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의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박사  
전 과정’ 및 ‘옥스퍼드대학교 박사후 과정’을 예  
비후보자홍보물, 명함,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의 홍보물에 게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될 것임.

(2012. 2. 1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될 것임.  
(2012. 2.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질의회답

【문】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당내에 선거대책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중앙당 또는 시·도당별로, 권역별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시에 자당 소속 기초·광역의원 및 기초·광역단체장을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2. 특히 기초·광역단체장의 경우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제약이 있는바, 선거관련 활동은 하지 않고 선거대책위원회에 명목상으로만 등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12. 2. 15. 자유선진당 사무총장 김용구 질의)

【답】 1. 선거대책기구 구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음.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대책기구 참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12. 2.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4대강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질의회답

【문】 국토해양부에서는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하여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

해 4대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국가 고유 업무인 직무상의 행위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보다 쉽고 편하게 4대강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하천법」 제3조제1항).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홍보방안이 4. 11. 예정되어 있는 총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지역별·수계별 시설 방문 및 이용 정보와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배포
  - ※ 홍보물 종류 : 브로슈어, 리플릿, 포켓북, 동영상, 사진 등 일반적으로 정책홍보를 위해 제작·활용되는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일체(재산적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홍보물)
  - ※ 제작주체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지방국토관리청(국토해양부 소속기관), 한국수자원공사(국토해양부 산하기관)
- 2. 각종 언론사(신문, 방송 등) 4대강사업관련 취재 지원 및 광고(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시행, 언론인 간담회, 각종 자료 제공
  - ※ 시행주체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 3. 공공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이용 정보 제공 및 4대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추진본부 또는 지자체 주관 행사 개최
  - 가. 공공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에 “4대강 이용도우미”(한국수자원공사 구축·관리) 배너를 탑재하여 이용정보 제공
  - 나. 4대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행사개최(연중)
    - 지역축제(지자체 주관) 개최시 4대강변 이용을 홍보하는 행위와 행사장내 홍보부스 설치운영(국토부)
    - ※ 예) 설맞이 행사, 봄맞이 행사, 생활체육활동, 식목행사 등 지자체 축제
    - 4대강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이벤트 개최(연중)

※ 시행주체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 예) 어린이 사생대회, 음악회, 현장학습, 오토캠핑 대회, 문화관 개관행사

4. 저소득층·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약자 및 출입기자단·외신, 주요언론매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 현장 방문

※ 초청주체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 현장 방문을 위한 차량 지원, 증식 제공 및 기념품 제공 가능 여부

(2012. 2. 15. 국토해양부장관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국가기관이 추진해 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과 해당 시설의 이용방법 등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에 해당될 것이므로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귀문의 언론 광고의 실시, 각종 행사의 개최, 현장방문지원 등의 홍보활동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9조·제86조·제103조·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2012.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재심개시결정 후 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질의회답

【문】 저는 제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이던 때 회계책임자의 수입·지출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2008. 8. 13.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본인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놓쳤습니다. 최근 관계자 증언을 통해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예비후보자들은 정식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8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2012년 1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재심을 청구, 재판부는 재심의 사유가 이유있다고 판

정, 2012. 2. 9. 재심청구를 수리하고 심리에 회부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의 약식재판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선거권 제한은 없다는 법조계의 견해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2. 22. 김종웅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음.

(2012. 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군 정년 전역 예정자의 입후보에 관한 질의회답

【문】 저는 34년의 군 생활을 하고 2012. 3. 31.부로 정년 전역이 예정된 자로 2010. 12. 20.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2011. 4. 1.부터는 전직지원교육 중에 있어 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 1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2012. 1. 10. 이전에 사직원(전역지원서) 접수중 등 예비후보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1. 19.부로 예비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입후보가 가능한지요?

(2012. 2. 16. 이성춘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중에 있는 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전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12. 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지역별로 내용이 다른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에 관한 질의회답

【문】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시 해당 선거

구내의 각 읍·면·동별로 내용을 달리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2. 27. 국회의원 김선동 질의)

【답】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 2제2항에 따라 1종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귀문과 같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읍·면·동별로 내용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12. 2.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통일부장관 특강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문】 민주평통 주관 통일공감 강연회 특강 요청 및 자체 특강계획 관련입니다. 민주평통의 통일부장관 특강 요청 및 우리부 자체 특강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바, 동 사안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민주평통 요청사항

- 요청일자 및 장소 : 대전(3. 15), 부산(3. 23), 광주(3. 28)
- 요청내용 : 통일부장관 특강
- 특강대상 : 각 지역 평통위원 및 일반국민 약 400명
- 특강내용 : 통일항아리, 통일재원 법제화 노력 등 정부의 통일준비사항 설명

나. 자체 특강 예정사항

- 예정일자 및 장소 : 울산(3. 22), 전주(3. 29)
- 특강대상 : 해당지역 대학생 약 200명
- 특강내용 :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최근 남북관계 현안

다. 검토 요청사항

- 통일부장관 특강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2012. 2. 28. 통일부장관 질의)

【답】 통일부장관이 선거기간 전에 직무와 관련하여 귀

문과 같은 특강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강의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강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위반될 것임.

(2012.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선거구역의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추가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문】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제 11374호)과 관련한 선거구 확정으로 기존 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 담양군이 새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질의드립니다.

1. 선거홍보물 발송내용의 문제

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추가 지역구 세대수의 10분의 1을 추가로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예비후보자홍보물 내용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나. 이런 경우 기 작성 배포된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새로 편입된 지역구에 대한 홍보나 정책이 전혀 들어가지 못해 발송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됨.

2.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된 분량과 잔여분량의 수정 배포가 가능한지 질의를 드립니다.

(2012. 2. 29. 이석형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게재내용이 다르게 작성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공직선거법」부칙 제9조에 따라 변경된 지역에 추가 발송할 수 있을 것임.

(2012.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국토종주 자전거길 지킴이단 발대식 행사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문】 우리부는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길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계별 국토종주 자전거길 지킴이단을 구성하고, '12년 봄을 맞아 시륜식의 개념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 지킴이단 발대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 '12. 3. 10(토), 11:00~14:20
- 장 소 : 남양주시 팔당수력발전소
- 참가규모 : 200여명 규모
  - 지킴이단 회장·총무 82명(41개 지자체×2명), 관계공무원 등 40명
  - 남한강 자전거길 지킴이 80명(남양주, 양평, 여주, 원주, 충주)
- 주요내용 : 회장단 위촉장 및 조끼 수여, 대표 선서, 자전거 라이딩(팔당수력발전소→이포보, 36km) 등
- 시간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1	1'	▶개회 선언	지역발전 정책국장
11:01~11:04	3'	▶위촉장 및 조끼 수여	장관님
11:04~11:05	1'	▶대표 선서	지킴이대표
11:05~11:10	5'	▶축 사	장관님
11:10~11:20	10'	▶준비 운동	참가자 전원
11:20~12:40	80'	▶자전거 라이딩(행 사장→양평 문화 회관, 23km)	
12:40~13:30	50'	▶오 찬	
13:30~14:20	50'	▶자전거 라이딩(양 평 문화회관→이 포보, 13km)	
14:20~		▶해 산	

□ 주요 행사내용

- 식전행사 : 군악대 공연(20')
- 공식행사
  - 위촉장 및 조끼 수여(3') : 11명( 시도별 1명)
  - 대표선서(1') : 지킴이 대표 고승호
  - 장관님 축사(5')
    - ※ 수계별 자전거길 지킴이의 역할 등 당부, 향후 발전방안 소개
- 자전거 라이딩
  - 50명 단위 그룹으로 나누어 출발, 그룹간 간격은 50m 정도 유지
    - ※ 양평경찰서 자전거순찰대(10명) 및 남양주시 지킴이단 활용, 선두 및 안전요원으로 활용
  - 이포보 해산을 원칙으로 하되, 귀가 시간을 고려하여 원거리 거주자 등은 희망자에 한해 양평군민회관에서 귀가 조치
    - ※ 팔당수력발전소로 되돌아가는 인원을 감안, 임차버스 1대 배치
- 오 찬 : 라이딩 중간 지점인 양평군민회관 인근에서 식당 또는 밥차로 검토

□ 자전거길 지킴이 개요

- 대상 : 지역내 자전거대표, 자전거동호인 등
- 임기 : 1년
- 역할 : 거주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하에 자전거길 주행환경과 시설물 유지·보존, 안전순찰 활동, 이용자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 파악, 자전거길 홍보 등
  - ※ 지킴이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

□ 질의내용

1. 4월 총선을 앞두고 3. 10(토),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0여명 규모의 국토종주 자전거길 지킴이단 발대식이 가능한지
2. 행정안전부가 3개 광역시, 40개 시·군·구에 서 지킴이단 발대식에 참석하는 지킴이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금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3. 해당 지자체장이 지킴이단 활동을 위해 3만원 상당의 활동복을 제작 및 제공이 가능한지
- 4. 지자체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촉장 및 활동복 전수식 개최(4월 중,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종료후)가 가능한지
- 5.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에 참여한 지킴이단 대표 및 총무 등에 자전거 라이딩 시 6~7천원 상당의 오찬 제공이 가능한지
- 6. 국토중주 자전거길 지킴이단 발대식 및 자전거 라이딩 코스에 해당하는 지자체인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등 지자체장이 행사장 참여가 가능한지

(2012. 2. 29. 행정안전부장관 질의)

【답】 1. 문 1·4·5·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중주 자전거길 지킴이단 발대식 행사에 참여하는 지킴이단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근무복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2. 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추가된 선거구역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에 거주하는 세대수의 1/10에 대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9일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인하여 선거구가 합구, 분구, 경계의 조정 등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수원시팔달구 선거구는 수원시병 선거구(수원시팔달구 전체와 수원시권선거서둔동)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선거구에 추가된 수원시권선거서둔동의 유권자에게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언제부터(시기) 얼마나(수량) 발송할 수 있으며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2. 국회의원 남경필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개정된 법률이 공포된 날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을 것임.

(2012.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유권자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에 관한 질의회답

【문】 예비후보자가 우편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가 정당하게 배부한 명함,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발송한 선거공보를 유권자가 스캔하여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자우편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받은 자가 리트윗 할 수 있는지?

(2012. 2. 28. 박윤정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전달(리트윗)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위탁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음.

(2012.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인터넷 손바닥tv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에 관한 질의회답

【문】 당사는 2011년 12월 2일부터 '손바닥tv'(이하 손바닥tv)라는 명칭으로 유선 및 무선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바닥tv'는 자체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는 물론 유튜브, 다음, 판도라tv 등의 제휴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운

영하는 '손바닥tv'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손바닥tv'의 콘텐츠 서비스에 2012년 총선에 출마 예정인 정치인, 정당인 등이 출연하여 인터뷰, 대담·토론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2. '손바닥tv'의 콘텐츠에는 후보자가 직접 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쓴 서적이거나 출연한 영화 소개와 같이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3. '손바닥tv'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특정 후보자들의 광고 동영상을 서비스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2012. 2. 27. MBC C&I 뉴미디어센터 뉴미디어기획팀장 김상현 질의)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바, 인터넷 손바닥tv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일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 수 있음.

(2012. 3.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교체에 관한 질의회답

【문】 선거사무원 교체는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이 이천시 여주군에서 여주군양평군가평군으로 변경된바, 기존 선거구에서 2배수 이내에서 선거사무원 교체를 모두 신고한 관계로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사무원 교체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사무원 교체를 추가로 할 수 없는지요?

(2012. 3. 5. 변성근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원을 2배수의 범위 내에서 새로 교체할 수 있을 것임.

(2012. 3.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당내경선 투표소에서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문】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 투표소 입구(외부)에서 '국민경선 기호3'을 기재하여 인쇄한 명함의 배포와 어깨띠 착용이 가능한지?

(2012. 3. 9. 장건상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규정된 어깨띠를 착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내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 주변에서 경선선거인을 대상으로 귀문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12.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당선자 예상 여론조사 등에 관한 질의회답

【문】 당시는 중앙일보사와 제휴하여 “4·11총선앱”을 개발하고 공동운영하는 수익사업을 계획중입니다. “4·11총선앱”의 정보 및 사업구조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앱 소개】

- “4·11총선앱”은 인터넷 앱스토어(애플, 안드로이드)와 중앙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4·11총선앱”은 예비/후보자들이 공개한 정보를 인명, 선거구, 정당별로 검색하여 보여줍니다.
- 중앙일보가 제공하는 모바일웹 홈페이지를 본 앱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 중앙일보가 제공하는 선거구별 지지율을 본 앱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 앱은 선거기간중 중앙일보사의 임시 뉴스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질 문】

1. 당사와 중앙일보는 금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선자 맞히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예비/후보자의 상세 정보페이지에 있는 “당선자 맞히기”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벤트의 결과는 실제 당선된 사람을 맞힌 이용자 중에서 245명을 추첨



그림 1 4·11총선앱



그림 2 당선자 맞히기 이벤트



그림 3 당선자 맞히기 단추

하여 모바일로 제공되는 유료쿠폰 등 매우 저렴한 선물을 증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벤트도 여론조사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제108조제4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4 상세보기, 인터넷홍보

2. 상기한 “당선자 맞히기” 이벤트의 상품이 소정의 선물이 아닌 이벤트 당첨자 개인의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등의 공익복지단체나 사업에 기부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제4항제3호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 그림 4의 기능은 후보자 SNS를 유권자들이 일일이 찾지 않고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당사와 중앙일보사가 유포하는 “4·11총선앱”의 예비후보자/후보자 “상세보기” 화면(그림4 참조)에는 아래와 같은 후보자의 적법한 선거운동용 “인터넷 홍보도구”의 기술적 연결을 당사가 소정의 광고비를 받고 제공합니다.
  - 페이스북 : 후보자 “타임라인” 및 “답변타크” 연결
  - 트위터 : 후보자 “타임라인” 연결
    - ※ 타임라인 :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유저 자신 및 친구들의 글을 모아 보여주는 부분
  - 미투데이 : 후보자 “마이미투” 페이지 연결
  - 홈페이지 : 카페, 블로그, 개인홈페이지중 택일 하여 연결
  - 유튜브 : 후보자채널(동영상홈페이지) 연결
  - 후원금 : 후원금계좌, 후원회 전화번호연결
 위의 항목들은 후보자가 특정하는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으로의 직접 연결이 아니라 대표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11 총선앱”은 인터넷상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후보자/예비후보자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의 ‘앱’입니다.

다시 부연하자면, 당사와 중앙일보사의 “4·11총선앱”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으로 연결해주고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귀 위원회에서 당사와 중앙일보의 “4·11총선앱”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 받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5호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4·11총선앱”이 언론사 홈페이지로 간주되어 ‘선거광고’를 게재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그림 1 하단 배너광고 형태로 선거광고를 유치하여 유료로 게재하는 수익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는 중앙일보사가 직접 영업하거나 당사가 중앙일보를 대리하여 광고영업을 전개하여 수익화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4·11총선앱”을 이용한 광고영업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바랍니다.

(2012. 3. 7. (주)다올소프트 대표이사 신상철 질의)

【답】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적용을 받는 여론조사에 해당될 것이며,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등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문 3·4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중에 귀문과 같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광고에는 광고주명과 선거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 3.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 등에 관한 질의회답

【문】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오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일반적인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통한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5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이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의정활동의 보고를 위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또한 횟수제한은 없는지?
2. 전자우편의 경우 의정보고서 PDF 자료 첨부, 제18대 국회활동 안내 등 그 내용이 의정활동에 해당할 때 제목 첫 줄에 ‘선거운동정보’를 넣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의정활동보고’가 제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2012. 3. 2. 국회의원 권영진 질의)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임을 표시함이 없이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는 자동 동보통신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송횟수는 제한되지 아니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임을 표시함이 없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에는 “선거운동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 의5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며, 이 경우 제목 등에 “의정활동보고”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2012. 3.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선거기간중 홍보마네킹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문】 이번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에 인사하는 홍보마네킹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선거기간중 인사하는 홍보마네킹을 각 선거 캠프에 임대할 수 있습니까?
2. 임대된 마네킹에 각 정당 유니폼, 모자,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습니까?
3. 마네킹 설치장소는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 선거사무실(빌딩) 입구, 선거차량)
4. 선거캠프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있습니까?
5. 홍보마네킹에서 멘트(각 정당과 후보자 이름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6. 임대된 마네킹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2012. 3. 12. 엔티테크 나관택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답을 위한 자동차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 모자, 어깨띠를 착용한 홍보마네킹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 입구에 귀문의 홍보마네킹을 설치하거나 홍보마네킹에 녹음된 소리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100조에 위반될 것임. 이 경우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답을 위한 자동차에 설치하는 홍보마네킹 임차료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

(2012. 3.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문화바우처 사업추진에 관한 질의회답

【문】 우리부와 16개 시·도 지자체는 계층간·지역간·세대간 문화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문화향수권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복지정책의 대표사업으로 개인

별 카드사업과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독거노인·재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연 관람 지원사업(기획바우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기획바우처 사업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 60일전 추진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 등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39조(국고보조)
  -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문화체육관광부, '11. 5월)
- 기획바우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문화카드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하여 공연·전시 등 관람 활동이 어려운 경우
  - 산간도서벽지와 같이 근린 문화시설이 없어 관람활동 시 교통비 등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문화에 대한 정보 부족, 보호자 문제 등으로 문화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시 거동이 불편하여 보조인솔자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기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문화복지 소외계층 및 관련 지원·보조 인력

- 지원내용
  - 〈모셔오는 서비스〉
    - 문화카드 소지자 또는 문화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공연장(전시장) 등으로 초청하여 문화서비스 제공
    - 관람 외 교통편 제공·보조인솔자 운영·수화통역 등 관람 편의 제공 등

- 관람 지원 시 필요한 경우 다과 또는 간식 제공  
(5% 나눔 사업 및 할인 제도('나눔티켓' 서비스))
- 국공립 공연장 및 국공립 공연단체의 자체기획 공연, 공공지원금 수혜단체 공연 등의 경우, 객석의 5%를 할애하여 문화카드 소지자에게 무료 제공
- 국공립 공연장 및 국공립 공연단체의 자체기획 공연, 공공지원금 수혜단체 공연 등의 경우, 문화카드 소지자에게 입장권 50% 할인 제공  
(재능 기부 및 재가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여 집밖 출입이 어려운 재가노인 또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 제공

□ 질의사항

기획바우처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및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진흥시책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행사인 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공직선거 60일 전 추진할 수 있는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 3.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기획바우처 사업에 따른 지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12. 3.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 관한 질의회답

【문】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제4항에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

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는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 제4항과 제5항에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2. 위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등에 누구든지 포함이 되는지요?
3.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자동 동보통신외의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 제4항과 제5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2012. 3. 13. 최창곤 질의)

【답】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4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2012. 3.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녹화기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문】 당사는 2012. 1. 13.자로 귀 위원회로부터 당사가 판매하는 휴대용 소형 프로젝터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용 가능한 녹음기 또는 녹화기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 경우 영상의 규격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8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8항 제2호는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에 대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은 '5제곱미터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제곱미터가 선거구 내 각기 다른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연설·대담 현장의 모든 녹화기의 화면 크기를 더한

규모를 말하는 것이지요?

(2012. 2. 29. (주)신양이앤씨 대표이사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답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대신한 사람이 특정한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행하는 선거운동으로 녹화기는 공개장소 연설·대답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바, 후보자등은 녹화기를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녹화기 화면의 규격은 그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면의 규격을 모두 합하여 5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함.

(2012. 3.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시 수취인 성명 기재에 관한 질의 회답

【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는 인쇄물을 발송할 때 발송대상과 매수 등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발송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4항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따라 주소와 성명이 표기된 발송용봉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4항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이름(성명)을 누락하거나 세대주님으로 표기하여 사실상 주소만 표기한 채 전 세대에 인쇄물을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4항을 따르지 않고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아파트 1동은 성명을 표기하고 1동은 성명을 누락하거나 세대주님으로 표기하여 사실상 주소만 표기한 채 보낼 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2.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음.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은 후에도 아파트 1동은 성명을 명기하고 1동은 성명을 누락하거나 세대주님을 표기하여 사실상 주소만 표기하여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2012. 3. 14. 국회의원 강기정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봉투에 수취인의 성명을 기재함이 없이 주소만을 적어 발송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2012. 3.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날인시 조립식도장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문】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가 추천장을 받기 위하여 거리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시 서명을 부탁드릴 계획입니다. 이 때 추천장에 서명하시는 분이 도장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글자를 조합한 조립식도장을 추천하시는 분에게 제공하여 날인을 부탁드리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2. 3. 13. 정혜정 질의)

【답】 귀문의 경우 후보자추천장의 날인은 선거권자 소유의 도장으로 받아야 할 것이므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제공하는 조립식도장을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날인을 받을 수 없을 것임.

(2012. 3.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선거기간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문】 본회는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근거하여 1947년 설립된 단체로 약 18만명의 교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직 단체입니다. 본회는 전국교육자의 교육·교원정책과 관련한 현장 교원의 소리를 회무에 반영하고, 본회 조직 강화의 목적으로 2009년부터 “전국교육자 대표 연수회 또는 워크숍”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동 사유로 “(가칭)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교육자치 사수! 2012년 제1회 전국교육자 대표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가칭)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교육자치 사수! 2012년 제1회 전국교육자 대표회의” 개요

- 가. 일 시 : 2012. 3. 30(금) 15:30
- 나. 장 소 :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 다. 참석대상자 : 전국의 교원 약 700여명(한국교총 임원, 대의원, 시·군·구교총회장, 조직·정책·교권119위원, 산하단체장 등)
- 라. 축사 초청대상자 : 교과부장관, 학부모단체장, 각 정당대표 등
- 마. 회의식순
  - (1) 회기입장 : 한국교총 회기 및 16개 시·도 교총 회기(전국 시군구 교총 피켓)
  - (2) 국민의례
  - (3) 결의문 채택
  - (4) 대회사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 (5) 축 사 : 축사 초청대상자
  - (6) 현장의 소리(제19대 국회 핵심 교육정책 입법 과제 중심)
  - (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 유·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및 교원 단체의 정당·후보자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 등

-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 교육감 선거제도 혁신(축소된 직선제 또는 교육선거 별도 실시), 교육위원회 부활
- (다) 교육기본법 개정
  - 학교폭력 등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 및 보호자의 1차적 의무와 책임 명확화
- (라)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 교원의 실질적 교육활동(교권) 보호
- (마) 교육공무원법 개정
  - 교원정년 환원, 교원학습연구년제 법제화
- (바)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도심-농어촌간 교육격차 완화
- (사) 유아교육법 개정
  -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및 행정지원체제 통일
- (아) 사립학교법 개정
  - 사립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 수준 보장
- (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가의 고등교육재원 확대
- (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여건 마련
- (7) 회세확장 및 조직강화를 위한 제언
- (8) 폐회

본회에서 계획 중인 전국교육자 대표회의 개최일(2012. 3. 30)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므로 회의개최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질의내용〉

1. 대회시 각 정당대표의 축사 가능여부

가. 2009년부터 전국교육자 대표회의에서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거나 축사를 요청하였는데 금년에는 교과부 장관, 교육공동체인 학부모단체장 및 각 정당대표에게 공문으로 축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교총이 각 정당대표에게 축사를

요청하고 각 정당대표가 축사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만약 각 정당대표에게 축사를 요청하는 것과 각 정당대표가 축사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각 정당에 공문으로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당대표만 참석하여 축사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또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임을 감안하여 각 정당대표자의 축사가 끝나면 퇴장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각 정당대표자가 퇴장을 하지 않고 본 회의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위배가 된다면 본회 계획대로 각 정당대표자에게 퇴장을 요청하였으나 각 정당대표자가 이를 거부하여 본 대회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경우 그 책임은 한국교총에 있는지 아니면 퇴실 거부를 한 정당대표에게 있는지

2. 대회명칭 사용 가능여부

2009년부터 매년 대회명을 변경하며 추진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가칭)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교육자치 사수! 2012년 제1회 전국교육자 대표회의”의 대회명을 사용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3. 회의시 교육공무원이 현장의 소리 발언 가능여부

기존 전국교육자 대표회의에서도 전국교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는데 금번 대회에서도 위 개요의 “현장의 소리”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직 교육공무원이 현장의 소리에서 발언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위배가 된다면 그 이유와 공무원으로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회의시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및 교육자치 사수”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 채택 가능여부

전문직 교원단체의 전국교육자대표자가 참석한

회의에 걸맞게 그 동안 회의에서 교원의 기본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외에 발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 인바(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및 교육자치 사수의 내용으로 작성될 예정임), 이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위배가 된다면 그 이유와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참석자 전체인지 또는 대회를 개최한 대표만 불이익 처분을 받는지)

(2012. 3. 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질의)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초청받은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당의 공약을 발표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1조·제101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3. 문 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 본연의 활동목적을 위하여 교원의 의사를 청취하거나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1조·제101조 또는 제103조 등 관련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임.

(2012. 3.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선거기사의 복사 게시·전송에 관한 질의회답

【문】 제19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SNS에 의한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제95조와의 관계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예비후보자 또는 그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선

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발송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지의 일간신문에 예비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그 기사를 아래와 같이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 1. 예비후보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일간신문(중이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전송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위반되는지요?
- 2. 예비후보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일간신문(인터넷신문)에 보도된 기사전문을 복사(내려받기)하여 질문 1과 같이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위반되는지요?

(2012. 3. 7. 최윤정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간신문(인터넷신문 포함)에 보도된 기사를 복사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95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이 경우 문자메시지는 문자가 아닌 화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는 전송할 수 없을 것이며,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제2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2012. 3.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인터넷을 통한 당선자 맞추기 행사에 관한 질의회답

**【문】** (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MBC (주)문화방송과 함께 2012년 4월 11일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네티즌의 활발한 투표 참여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이벤트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아래와 같이 기획한 이벤트(이하 '본 이벤트')가 「공

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바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 1. 기획 의도  
본 이벤트는 헌법이 보장한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이 진정한 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기획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선거의 중요성을 감안, 자신이 속한 선거구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벤트에 참여하게 하여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기획의 방향입니다.

- 2. 기획 방향(Main concept)  
본 이벤트는 이용자에게 확장시절 '시험'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시험' 콘셉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용자는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본 이벤트가 '시험' 또는 '퀴즈'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 3. 이벤트 개요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험문제를 푸는 퀴즈 형식으로, 2012년 4월 11일 전일까지 전체 246개 선거구 당선자를 맞추어 답안을 제출하고, 선거 종료 후 당선자가 확정되면 제출된 답안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 고득점을 획득한 참여자(6명)에게 소정의 비현물성 상품(예: 방송프로그램 방청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 4.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본 이벤트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여론조사에 해당 되는지 및 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확인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별지 첨부내용 요약]

본 이벤트는 「사회 문제나 특정 쟁점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 즉,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참여자 개인은 타인의 의견을 전혀 알 수 없어 Bandwagon effect

또는 Underdog effect를 발휘하여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본 이벤트를 진행하는 기관(Daum과 MBC)은 선거 확정 결과와 비교하여 고득점자가 누구인지, 몇 명 정도가 되는지만 확인할 뿐 기타 어떤 후보자가 얼마만큼의 선택을 받았는지 등 통상의 여론조사가 진행하는 조사 집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도나 공표도 하지 않습니다.

(2012. 3. 14.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질의)

**【답】** 귀문의 경우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여론조사에 해당할 것이므로,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같은 조 제4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2. 3.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후보자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등에 관한 질의회답**

**【문】** 1. 신문기사 복사본 배포와 관련하여 “제19대 총선후보자가 불법자금을 받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일간지 보도기사를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지

2. 「공직선거법」 제65조의 선거공보 작성 내용과 관련하여

가. 상기 ‘1’번의 질의내용인 “일간지 보도기사”를 선거공보에 게재할 수 있는지

나. 상대후보자의 제18대 총선 공보물에 게재된 특정내용을 발췌하여 비교표를 작성하여 제19대 총선 공보에 게재할 수 있는지

3. 선거당일 문자발송과 관련하여 특정후보 지지·추천없이 단순 투표참여 권유의 문자를 후보자 명의로 발송할 수 있는지

(2012. 3. 13. 국회의원 정양석 질의)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에 후보자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2. 3.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정당의 정책홍보 라디오광고에 관한 질의회답**

**【문】** 우리 당에서는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지 당의 정책홍보를 하고자 하는바, 아래 시안을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애기엄마 들어봤어? 대국민중심당?

네 우리 젊은 엄마들 기 살려주는 정당이잖아요...

철수할아버지 할머니도 대국민중심당?

당연하죠 어르신들 기 살려 드리는 당

노인과 젊은 엄마를 위한 정당

국민중심 국민중심 국민중심당 가자! 대국민중심당

2. 국민중심 국민중심 대국민중심당

다시 한 번 힘차게

국민중심 국민중심 대국민중심당

국민중심 국민중심 대국민중심당

오케이 쿤

노인과 젊은 엄마를 위한 정책정당

가자!대국민중심당

(2012. 3. 19. 가자!대국민중심당 대표 구천서 질의)

**【답】** 정당이 귀문과 같이 자당의 정책을 라디오 광고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012. 3.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문】 최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이후 해당 정당과 언론 등에서는 양 정당의 단일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권이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21개 정당 중 새누리당을 제외한 민주통합당(민주당), 자유선진당(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가자!대국민중심당(국민당), 경제백성당(경제당), 국가재건친박연합(친박연합), 국민생각, 국민행복당, 국제녹색당, 기독사랑실천당(기독당), 기독자유민주당(기민당), 미래연합, 민주통일당(통일당), 사회당, 새마을당, 진보신당, 한국기독교당, 한국문화예술당, 한나라당 등 20개 정당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야권단일후보”라 함은 위 20개 야권 정당의 단일후보를 의미할 것입니다.
  2. 이런 의미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후보는 양당 단일후보일 수는 있어도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당 단일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양당 연대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까지 양당 단일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혼동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실제로 여타 정당들의 선거운동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 (2012. 3. 12. 진보신당 상임대표 홍세화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후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각 선거구별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전체적 표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문】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르면,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의미하는바, 다음 내용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또는 여론조사경선(이하 ‘경선’이라 함) 방식으로 공천함에 있어 당의 최고위원회와 공천위원회가 경선을 통한 후보자선출 방법으로 본인이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그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 후보로 선출할 것을 의결하고, 후보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자의 가산점을 확인한 후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당해 같은 선거에서 타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2012. 3. 21. 새누리당 사무총장 질의)

【답】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9. 10. 21.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위원 이재명의 질의에 대한 2009. 1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012.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문】 공직후보자를 공천함에 있어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결과에 (1) 여성 가산, (2) 표창·징계에 따른 가·감산, (3)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가산을 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불복이 금지되는 경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 경선의 의미를 가장 좁게 해석하여, 투표 (또는 여론조사)결과 외에 어떤 가감을

해도 안 되므로 여성가산제는 물론 어떤 가감산 요소를 도입하는 경선도 불복할 수 있음.

을 설 : 여성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없고, 표창·징계 및 사무직 당직여부는 과거 사실에 의한 것으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므로 위 3가지 사유를 이유로 가감산한 경선결과에는 불복할 수 없음.

병 설 : 주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여성우대는 가능하지만, 표창·징계 및 사무직 당직 등은 비록 과거사일지라도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 '불복이 금지되는 경선'결과에는 가감산이 허용되지 않음.

정 설 : 기타 위 이외의 의견  
(2009. 10. 21.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 위원 이재명 질의)

【답】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서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를 혼합하여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09. 1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 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문】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갑선거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 받은 사람입니다. 본인의 이름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유성걸(柳性杰)”로 표기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류성걸(柳性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발간한 “2012 선거아카데미 공직선거법

길잡이”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리, 류, 라’와 같이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하여온 경우라면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명함, 선거벽보, 현수막,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이(리)○○, 유(류)○○ 또는 이○○(리○○), 유○○(류○○)” 등과 같이 병기할 수 있음(2006. 4. 18. 회답)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귀 위원회의 회답의 취지대로 각종 홍보물에 ‘유(류)성걸’ 또는 ‘유성걸(류성걸)’로 표시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이 경우 선거구민의 입장에서는 각종 홍보물에 따라 본인을 ‘유(류)성걸’ 또는 ‘유성걸(류성걸)’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투표용지에도 ‘유(류)성걸’ 또는 ‘유성걸(류성걸)’로 인쇄하여 선거구민의 인식과 일치하도록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귀 위원회의 견해는?

2. 귀 위원회의 ‘2006. 4. 18. 회답’에서는 ‘리, 류, 라’와 같이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에 ‘류성걸(柳性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귀 위원회의 설명대로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유성걸’과 ‘류성걸’을 병기하여 ‘유성걸(류성걸)’로 각종 홍보물에 사용하고 홍보물에 표시한대로 투표용지에도 인쇄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귀 위원회의 견해는?

3. 이 때 ‘유(류)성걸’ 또는 ‘유성걸(류성걸)’ 두 가지 표기방법 중 하나로 미리 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통보한 대로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은 홍보의 시대이니 만큼, 홍보한 대로 인식하고, 홍보에 따라 인식한 대로 행동하는 메카니즘을 고려한다면, 홍보한 대로 투표용지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방송, 선거관련 언론사에

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선거구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거구민의 인식을 그대로 투표용지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귀 위원회의 견해는?

(2012. 3. 19. 류성걸 질의)

【답】 귀문의 경우 투표용지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인 ‘유성걸’로 기재하여야 할 것임.

(2012.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정당·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질의회답

【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5호의 범위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그 주체나 시기·방법을 제한할 수 없어 정당이나 후보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시기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보자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1.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별도의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 또는 홍보인쇄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는지
2.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신문이나 인터넷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지
3. 위 1·2의 행위에 대하여 수량·횟수제한이 있는지, 명의를 부각시켜도 되는지 및 정당 명칭·후보자의 성명 외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기호(정당추천 후보자의 경우 소속 정당명 포함)를 표시할 수 있는지

(2012. 3. 16. 최윤성 질의)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는 그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5호의 범위에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5호의 범위에서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을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시설물·인쇄물·광고의 수량 또는 횟수는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후보자의 사진·기호를 게재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투표참여 권유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제94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임.

(2012.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치자금법]

○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특별당비 부과에 관한 질의회답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특별당비(또는 기탁금, 이하 같음) 납부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은 기탁금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해 홍보물(명함·선거공보 등) 작성, 후보자의 방송연설, 방송 및 신문광고, 인터넷광고 등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1조(당비)에 근거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등 당 공식기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들에게 일정 금액(예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내 등)을 정하여 특별당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2. 2. 15. 자유선진당 사무총장 질의)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하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면 무방할 것임.

(2012. 2.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공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2-52호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 고 번 호    제 452 호
2. 명            칭    국민통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3, 유창빌딩 906호
4. 대 표 자
  - 성 명 : 안상조(安商祚)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742 효창하이츠
5. 결 성 연 월 일    2012년 2월 19일
6. 신 고 연 월 일    2012년 2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2-54호

## 중 앙 당 등 록 공 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제 156 호
2. 명 칭 경제백성당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300번지 이수자이 101-2103
4. 대 표 자
  - 성 명 : 안동옥(安東玉)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89
5. 등 록 연 월 일 2012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2-55호

## 중 앙 당 등 록 공 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제 157 호
2. 명 칭 국민생각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아이비피아 8층
4. 대 표 자
  - 성 명 : 박세일(朴世逸)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49-30 롯데캐슬로
5. 등 록 연 월 일 2012년 2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2-58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제 453 호
2. 명 칭 불교통일연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317호
4. 대표자
  - 성 명 : 이재열(李在烈)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5. 결성연월일 2012년 2월 22일
6. 신고연월일 2012년 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2-59호

중앙당 변경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 등 록 번 호 제 113 호
- 2. 명 칭 친박연합
-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명 칭		친박연합	국가재건친박연합(친박연합)
인영	당인		
	대표자 직인		
당 헌		덧붙임2과 같음	

※ 위 인영의 크기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4. 변경등록연월일 2012년 2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2-60호

중앙당 변경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 등 록 번 호 제 145 호
- 2. 명 칭 미래연합
- 3. 변 경 사 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	이규택(李揆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431	김명수(金明洙)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51,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 잡사회관 701호

- 4. 변경등록연월일 2012년 2월 29일

공고 제2012 - 107호

### 보 조 금 지 급 공 고

다음과 같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등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일
	계	선거보조금	여성추천 보조금	장애인추천 보조금	
합 계	35,528,273,000	34,394,391,850	1,133,881,150	-	2012.3.26.
새누리당	16,520,092,230	15,775,493,210	744,599,020	-	
민주통합당	12,740,997,610	12,351,715,480	389,282,130	-	
자유선진당	2,482,440,910	2,482,440,910	-	-	
통합진보당	2,196,055,710	2,196,055,710	-	-	
창조한국당	877,524,300	877,524,300	-	-	
국민생각	23,274,400	23,274,400	-	-	
진보신당	687,887,840	687,887,840	-	-	

# 공지사항

##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 1. 개최일시 : 2012. 2. 24.(금) 10:00~12:00
- 2. 개최장소 : MBC스튜디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 3. 중계방송 : MBC·KBS·SBS 동시 생중계
- 4. 토 론 자
 

○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 우 여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 진 표
○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김 낙 성
○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강 기 갑
○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한 면 희
○ 진 보 신 당	부 대 표	심 재 옥
- 5. 사 회 자 : 정 혜 정(방송인)
- 6. 토론주제 : 각 당의 핵심 복지정책과 그 실현 방안
- 7. 진행방식 : 사회자 공통질문 ⇒ 자유토론 ⇒ 주도권토론 ⇒ 맺음말



##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 1. 개최일시 : 2012. 3. 5.(월) 10:00~12:00
- 2. 개최장소 : KBS스튜디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 3. 중계방송 : KBS·MBC·SBS 동시 생중계
- 4. 토 론 자
 

○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 성 린
○ 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	우 상 호
○ 자유선진당	대 변 인	문 정 립
○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 시 민
○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한 먼 희
○ 진 보 신 당	대 표	홍 세 화
- 5. 사 회 자 : 신 울(명지대 교수)
- 6. 토론주제 : 19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
- 7. 진행방식 : 사회자 공통질문 ⇒ 자유토론 ⇒ 주도권토론 ⇒ 맺음말



##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 정당등록(25)

(2012. 3. 21. 현재)

정당명 (약칭)	등록연월일	대표자(생년)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새누리당	'97. 11. 24	朴槿惠(52)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한양빌딩(여의도동)	3786-3000
민주통합당 (민주당)	'11. 12. 23	韓明淑(44)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영등포동 6가)	1577-7667
자유선진당 (선진당)	'11. 10. 17	沈大平(41)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용산빌딩 3·4층(여의도동)	780-3988
통합진보당	'11. 12. 13	李正姬(69)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26, 솔표빌딩 12층(대방동)	2139-7777
창조한국당	'07. 11. 7	권한대행 宣晷植(49)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70, 골든타워 P층(불광동)	784-4701
국민생각	'12. 2. 27	朴世逸(4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아이비피아 8층(여의도동)	784-7400
가자!대국민중심당(국민당)	'11. 10. 25	具天書(5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9층(적선동)	3210-6000
경제백성당 (경제당)	'12. 2. 27	安東玉(61)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300 이수자이 101동 2103호(사당동)	3482-0114
국가재건친박연합(친박연합)	'06. 5. 3	鄭羅坤(50)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55, 우도빌딩 5층(효창동)	711-1922
국민의힘	'12. 3. 15	金浩一(42)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9층(여의도동)	780-3150
국민행복당	'11. 12. 13	許坪桓(4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2, 가든빌딩 1001호(여의도동)	747-2012
국제녹색당	'07. 8. 8	李來元(44)	서울시 종로구 종로17길 12, 뉴파고다빌딩 209호(종로2가)	747-1958
기독교자유민주당(기독당)	'11. 9. 26	金忠立(47)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206호(연지동)	708-4133
녹색당	'12. 3. 15	李賢珠(59)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84, 진흥빌딩 4층(영등포동1가)	737-1711
대한국당	'12. 3. 13	奉泰弘(61)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15-8, 5층 508호(공덕동)	3275-2012
미래연합	'10. 4. 27	金明洙(4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 잠사회관 701호(여의도동)	334-1500
민주통일당 (통일당)	'08. 10. 29	安光洋(44)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트타워 505호(여의도동)	3432-0680
불교정도화합통일연합당 (불교연합당)	'12. 3. 15	李在烈(49)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6, 리버타워 701호(여의도동)	785-3300
새마을당	'12. 2. 13	金機贊(46)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14 한상빌딩 303(목동)	780-1274
정통민주당	'12. 3. 15	韓光玉(42) 文善洪(72)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3-1, 이스턴빌딩 3~6층(서교동)	332-2040
진보신당	'08. 3. 17	洪世和(4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801호(여의도동)	6004-2000
청년당	'12. 3. 19	姜珠姬(74) 權完秀(84)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2가길 59, 우제빌딩 3층(합정동)	779-3038
한국기독당	'11. 8. 8	鄭勳(4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17길 16, 무악빌딩 5층(현저동)	364-3040
한국문화예술당	'08. 10. 20	金永鍾(68)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32, 희영빌딩 3층(개포동)	572-9080
한나라당	'06. 10. 10	李泰熙(58)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라길 5, 진선미빌딩 6·7층(체부동)	738-0560

■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11)

창당위명	신고연월일	대표자(생년)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활동기간 만료일
새 세 대 희 망 당	'11. 10. 18.	金光洙(59)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79-17, 건영빌딩 402호(문래동 3가)	010-9701-8717	'12. 4. 18.
개 혁 국 민 당	'11. 10. 20.	權五成(62)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47(당주동)	736-9760	'12. 4. 20.
국 민 정 치 시 대	'11. 11. 16.	許 圭(4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2, 금강빌딩 301호(여의도동)	785-2313	'12. 5. 16.
민 주 시 민 연 대	'11. 12. 9.	康哲殷(4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용비어천가 1026호(내수동)	735-0875	'12. 6. 9
선 진 한 국 당	'11. 12. 12.	申鉉廈(43)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69 동일빌딩 7층(수송동)	070-8959-4618	'12. 6. 12
국가세계통일연대	'12. 2. 8.	陳壽哲(43)	서울시 중구 통일로86 3층 309호(순화동)	6399-6777	'12. 8. 8
겨 레 당	'12. 2. 13.	柳承求(61)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11길 41, 보광빌딩 신우인장(낙원동)	011-439-2732	'12. 8. 13
국 민 통 합 당	'12. 2. 22.	安商祚(6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3, 유창빌딩 906호(여의도동)	2277-5253	'12. 8. 22
민 생 당	'12. 2. 29.	金聖富(51)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양재대로 478(개포동)	010-3265-0865	'12. 8. 29
한 나 라 보 수 당	'12. 3. 9.	劉珏均(4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64길 13, 서초애지양 801호(서초동)	2235-7799	'12. 9. 9.
21C국민통합당	'12. 3. 13.	申貞淑(5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4-12(대치동)	010-7586-6567	'12. 9. 13.